



편집지침

1. 표제의 원칙

▲ 2013-1106 신문윤리강령 위반 경향신문 발행인 송 영 승

〈주문〉

경향신문 2013년 3월 28일자 14면 「김재철, 3억원 넘는 퇴직금 챙기려 ‘꿈수 사직서」」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경향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에서 해임한 김재철 MBC 사장(60·사진)이 27일 사표를 제출했다. 주주총회의 해임에 앞서 자진사퇴 형식을 취하면 3억원이 넘는 퇴직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돼 김 사장의 사퇴를 두고 ‘꿈수’ 논란이 일고 있다.

MBC는 27일 “김 사장이 27일 방문진 뜻을 존중해 사퇴하겠다고 밝히고 회사에 사직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주식회사인 MBC는 상법상 대표이사가 사임 의사를 피력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김 사장의 사표 수리로 MBC는 차기 사장이 선임될 때까지 안광한 부사장이 사장 직무를 대행한다. 김 사장은 지난 26일 MBC 최대주주인 방문진 이사회에서 해임 결의안이 통과돼 해임까지는 주총 의결만을 남겨놓은 상황이었다. MBC 홍보국 관계자는 “해임당하는 것보단 자진사퇴하는 게 모양새가 낫지 않은가”라며 “김 사장 스스로 그런 판단을 내려 사퇴를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MBC 노조는 “김 사장이 3억원이 넘는 퇴직금을 챙기기 위해 자진사퇴라는 꿈수를 부렸다”고 지적했다. MBC의 임원 퇴직연금 지급규정을 보면

“임원이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주총회의 해임결의에 의해 퇴임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김 사장이 주총에서 해임이 확정되기 전에 자진사퇴하면 근속연수에 따라 약 15개월분의 퇴직연금을 받고 그 금액이 3억~3억5000만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검찰은 김 사장이 제일동포 무용가 정모씨에게 회사 돈으로 각종 특혜를 준 혐의 등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15일 김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9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고, 최근 전주·청주·안동 MBC 등 지역 방송사에서 김 사장의 배임 혐의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받았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은 조만간 김 사장을 재소환할 계획이다.(후략)』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경향신문은 위 기사에서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가 해임하기로 결정한 김재철 MBC 사장이 해임 의결을 할 주주총회를 앞두고 지난 3월 27일 사표를 제출했다고 전하면서 자진사퇴는 3억원이 넘는 퇴직금을 받기 위한 ‘꼼수’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MBC의 임원 퇴직연금 지급규정에는 임원이 본인의 귀책사유로 주주총회 해임결의에 의해 퇴임하면 퇴직금을 못받도록 돼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규정과 연관지어 기사는 『MBC 노조는 “김 사장이 3억원이 넘는 퇴직금을 챙기기 위해 자진사퇴라는 꼼수를 부렸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그리고 『김 사장이 주총에서 해임이 확정되기 전에 자진사퇴하면 근속연수에 따라 약 15개월분의 퇴직연금을 받고 그 금액이 3억~3억5000만원에 이른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는 노조의 주장이고 추측일 뿐이며 MBC 측의 공식적인 입장은 기사에서 밝힌대로 『“김 사장이 27일 방문진 뜻을 존중해 사퇴하겠다고 밝히고 회사에 사직서를 전달했다”』는 것이다.

기사는 김 사장의 ‘본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기술은 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편집자는 큰 제목을 「김재철, 3억원 넘는 퇴직금 챙기려 ‘꼼수 사직서’」라고 단정적인 표현으로 달았다.

이 같은 제목은 특정인에 대한 선입견이나 편견에 따라 과장됐다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나아가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 「편집지침」 ①항(표제의 원칙), ③(미확인사실 과대편집 금지)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110 신문윤리강령 위반
충청투데이 발행인 정 남 진**

〈주문〉

충청투데이 2013년 3월 28일자 7면 「학원가 편만 드는 꼭두각시 교육당국」 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충청투데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대전교육청이 동·서부권의 지역 간 교육환경과 경제적 편차 등을 고려치 않고, 학원 수강료 기준액을 똑같이 편성, 큰 폭으로 인상시키면서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은 지난해 일괄적으로 ‘교습비 조정위원회’를 열고, 학원 수강료를 최대 5배 이상 인상하는 안을 가결시켰다.

분야별 인상안을 보면 동부의 경우 입시학원(종합) 수강료는 2011년 기준 분당 27원에서 135원으로, 보습은 초등이 82.5원에서 165원으로, 중등이 85.56원에서 194원으로, 고등이 85.56원에서 199원으로 각각 올랐다.

또 웅변과 속셈은 각각 82.5원에서 140원으로, 컴퓨터는 85원에서 130원으

로, 각각 인상됐다. 서북도 입시학원(종합) 수강료가 같은 기간 분당 26원에서 135원으로, 초등과 중등, 고등이 82.5원, 85.55원, 103원이었던 보습 수강료는 각각 165원, 194원, 199원 등으로 일제히 올랐다.

문제는 지난해 학원수강료 기준액의 인상폭이 지나치게 높았고, 지역·경제적 수준이 상이한 동부와 서부가 모두 똑같은 기준액으로 맞춰졌다는 점이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해도 학원수강료 기준액이 최대 5배 이상 인상됐고, 분당 단가도 동부와 서부가 대부분 일치하기 때문이다. 입시학원의 분당단가는 종합반과 초등·중학교·고등학교 등 4개 과정에 걸쳐 동부와 서부 모두 동일했다.

또 외국어는 유치원과 초등 과정이 모두 분당 190원으로 똑같았고, 음악, 미술, 무용 등의 예능관련 학원 수강료 역시 일치했다. 독서실과 웬변, 속셈, 컴퓨터 등의 분야에서도 수강료는 양 지역간 수준과 별도로 모두 같은 분당단가가 적용됐다. 이에 따라 학부모들은 “학원들의 불·편법적 수강료 인상도 문제지만 이처럼 교육당국이 학원가의 입장만 대변, 수강료 기준 자체를 높게 책정해주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시민 이모(45·대덕구 읍내동) 씨는 “서구나 유성구 등의 교육·경제적 환경과 동구와 중구, 대덕구 등 원도심의 환경이 다르지만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모두 똑같은 수강료를 받는다는 것은 전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말로는 ‘사교육비를 잡겠다’고 떠들지만 실질적으로는 학원들 편만 드는 교육당국의 행태에 화가 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동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지난해 교육부와 지침과 학원연합회의 요구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학원수강료 기준액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충청투데이는 위 기사에서 대전 동·서부교육청이 동·서부권의 지역간 교육환경과 경제적 편차 등을 고려치 않고, 학원 수강료 기준액을 똑같이 편성해 결과적으로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대전 동·서부교육지원청은 지난해 ‘교습비조정위원회’를 열고, 학원수강료를 최대 5

배 이상 인상하는 안을 가결시켰고, ‘경제적 수준이 상이한 동부와 서부가 모두 똑같은 기준액’으로 적용했다. 이 때문에 학부모들은 교육당국이 학원가의 입장만 대변하고, 동부와 서부의 교육환경이 다른데도 똑같은 수강료를 책정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학원의 교습비 기준을 정하는 곳은 ‘학원법’에 따라 각 교육지원청에 구성된 교습비조정위원회다. 관련법에 따르면 이 위원회는 7~11명 위원으로 구성되며, 학부모는 물론이고, 학원장도 참여할 수 있다. 다만 학원장인 경우 2명까지만 위원이 될 수 있다. 위원회는 관할 지역 학원의 교습비 기준 외에 학원비 과다 여부도 심의한다. 따라서 동·서부지역 수강료 기준액은 동부교육청과 서부교육청의 교습비등조정위원회가 각각 책정한 것이다. 교육당국이 일방적으로 수강료 기준액을 인상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닌 셈이다.

그런데도 편집자는 단정적으로 「학원가 편만 드는 꼭두각시 교육당국」이라는 제목을 달았다. 기사는 한 시민이 “말로는 ‘사교육비를 잡겠다’고 떠들지만 실질적으로는 학원들 편만 드는 교육당국의 행태에 화가 난다”고 말한 것으로 적었으나 그가 한 말은 교육당국에 대한 일반적인 불만을 토로한 것이지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다. 게다가 ‘꼭두각시’는 남의 조종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나 조직을 일컫는 것으로 이 경우에는 교육당국을 근거없이 폄하한 것이다.

이러한 기사 제목은 기사 내용과도 다르며 사실을 왜곡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고, 이 같은 제작태도는 신문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165 신문윤리강령 위반
세계일보 발행인 김 병 수

〈주 문〉

세계일보 2013년 6월 11일 15면 「中 자원야욕 북극으로 뺏어간다」 기사의 제목에 대해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세계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세계 자원 확보에 치중하는 중국이 ‘자원의 보고’인 북극 진출의 야심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9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중국 국영 석유기업인 중국해양석유총공사(Cnooc)는 아이슬란드의 석유개발 업체인 아이콘 에너지와 함께 아이슬란드 동북부 해안 석유개발권을 신청하기로 했다. 지역은 아이슬란드와 노르웨이가 공유하는 북해 얀 마이엔 섬 주변이다. 개발권 허가를 얻을 경우 중국해양석유는 중국 석유기업으로는 처음으로 북극 자원 개발에 착수하게 된다. 개발권 승인 여부는 가을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석유개발권 신청은 지난달 중국이 북극이사회 정식 옵서버 자격을 얻은 지 한 달도 안 돼 나온 것이다. 세계 각지에서 석유, 천연가스 등 끊임없이 자원 확보에 나서고 있는 중국이 북극 개발에 본격 뛰어든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아이콘 에너지에 따르면 북극은 석유와 천연가스뿐 아니라 광물 매장량이 막대하다. 여기에 수송 항로의 가치도 크다. 현재 북극지역에는 석유가 1억t 이상 매장돼 있으며 천연가스 매장량도 세계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북극 자원 개발은 중국과 아이슬란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로 풀이된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아이슬란드는 중국 자본을 유치함으로써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중국은 이를 계기로 북극지역에 대한 영

향력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4월 중국과 아이슬란드가 자유무역협정(FTA)에 공식 서명한 것도 이 같은 이해관계 때문이다. 중국이 유럽 국가와 FTA를 맺은 것은 아이슬란드가 처음이다.

하지만 중국 자본의 아이슬란드 유입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아이슬란드 정부가 자본 유출입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어서다. 그러나 FT는 중국이 자원뿐 아니라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물자를 수송하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북극 진출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세계일보는 위 기사에서 중국이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아이슬란드 동북부 해안 석유개발권을 신청했다고 전하면서 이는 세계각지에서 석유, 천연가스 등 자원을 확보하려고 끊임없이 나서고 있는 중국이 북극 개발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신호탄으로 해석했다.

문제는 「中 자원야욕 북극으로 뻗어간다」는 이 기사의 제목이다. ‘야욕’이란 단어는 사전적으로 ‘자기 분수를 넘어서는 큰 욕심’을 뜻하는데 주로 사리에 맞지 않는 경우에 부정적으로 표현할 때 쓴다. 그러므로 위 기사 제목은 중국이 북극으로 진출하면서 자원확보를 꾀하는 일이 자기 분수나 사리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함축하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 세계 각국이 자원확보를 위해 해외 각지에서 경쟁을 벌이는 것은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현상이다. 중국이 적극적으로 자원확보 경쟁에 나선다고 해서 유독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는 일이다. 기사 본문을 보면, ‘중국이 … 북극 진출의 야심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면서 ‘야심’이라는 보다 완화된 표현을 쓰고 있는데 제목은 이를 자극적으로 과장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①항(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 「편집지침」 ①항(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167 신문윤리강령 위반
경향신문 발행인 송 영 승

〈주문〉

경향신문 2013년 5월 27일자 13면 「노무현 전 대통령 4주기 추도식 날 MB는 봉하마을 인근서 골프 쳤다」 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경향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 4주기 추도식이 열린 지난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 인근에서 골프를 쳐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과 친노무현계 인사들은 강력 반발했다.

민주당 배재정 대변인은 26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노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이 전 대통령이 또 한번 국민 가슴에 대못을 박은 셈”이라고 비판했다.

배 대변인은 “이 전 대통령은 퇴임하자마자 국민이 사용해야 할 테니스장을 혼자 독차지해 사용하다가 국민적 지탄에 직면했던 것을 벌써 잊었는가”라며 “진정 국민들의 정서를 읽어 낼 능력이 없는 것인가”라고 밝혔다.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춘추관장을 지낸 민주당 김현 의원은 지난 25일 트위터에 “노무현 전 대통령 4주기 날 이 전 대통령은 근처에서 골프 쳤답니다”라며 “때와 장소에 따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을 분간하는 것이 사람의 최소한 도리죠. 이 분 정말!!”이라고 남겼다. (중략)

민주당 최민희 의원 역시 트위터에 “이 전 대통령이 노 대통령 서거 4주기 바로 그날, 거제도에서 골프치셨네요. 참회의 골프였을까요?”라고 남겼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봉하에서 추도식이 열린 23일 거제의 한 골프장에서 청와대 참모였던 하금열 전 대통령실장, 천영우 전 외교안보수석, 이동관 전 홍보수석, 김효재 전 정무수석 등과 골프를 쳤다.

이 전 대통령은 이후 거제 인근 외도를 관광한 후 이튿날인 24일에도 골프를 즐겼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경향신문은 위 기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4주기인 지난 5월 23일 자신의 재임 당시 청와대 참모들과 함께 경남 거제시 장목면에 있는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사실과 관련해 야권 인사들의 발언 내용을 중심으로 비판적으로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그런데 기사와 제목에서 이 전 대통령이 골프를 친 곳을 ‘봉하마을 인근’이라고 표현했다. 노 전 대통령의 추도식이 열린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과 거제시 장목면은 시외버스를 타더라도 2시간 이상 걸릴 만큼 바다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다. ‘인근’의 사전적 의미는 ‘이웃한 가까운 곳’으로, 봉하마을과 장목면에는 어울리는 표현이 될 수가 없다.

그런데도 기사와 제목에서 『인근에서 골프를 쳐』 「인근서 골프 쳤다」라고 굳이 표현한 것은 남의 슬픔은 아랑곳없이 본인 즐기는 데만 열중했다는 ‘무례’와 ‘몰상식’의 뉘앙스를 강조하려는 의도 때문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따라서 위 기사와 제목은 사견이나 편견에 따라 과장됐다는 지적을 받을 소지가 크고, 보도의 공정성과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169 신문윤리강령 위반
헤럴드경제 발행인 이 영 만

〈주 문〉

헤럴드경제 2013년 6월 11일자 10면 「특성화高 높은 취업률 ‘빛좋은 개살구」」 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 유〉

1. 헤럴드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2011년 12월 기아자동차 광주 공장에서 뇌출혈로 쓰러진 김민재(당시 19세) 군. 특성화고 재학생으로 기업 현장실습을 나갔던 김 군은 주말특근은 물론 2교대 야간근무에도 투입됐다. 근로기준법상 청소년이던 김 군은 본인 동의가 있어도 하루 8시간 이상 일할 수 없었지만 현장에서는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일 뿐이었다.

지난해 12월 울산 앞바다에서 작업선 전복사고로 사망한 홍성대(당시 18세) 군도 실습 나온 특성화고 학생이었지만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바다에서 추가 근무 중 변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생의 취업률은 높아졌지만, 무리한 현장실습 환경에서 학생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열악한 현장실습에 대한 지적이 일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4월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 개선대책’을 마련해 1일 7시간 주 40시간 이내의 실습시간, 야간(오후 10시~익일 오전 6시)·휴일 실습 불가 및 주 2회 휴무 등의 내용을 보장하도록 했다.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은 고용부 근로감독관이 소속된 현장실습 점검단과 현장실습컨설팅단을 구성, 서울시내 특성화고 78개교에 파견하기도 했다.

그러나 잇단 정부 대책에 대해 일선 현장 전문가는 회의적인 반응이다.

정진후 진보정의당 의원은 현행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현장실습의 목적이

나 운영방안에 대한 내용이 전혀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현장 교육이 목적이지만 실제로는 기업의 입맛대로 일을 시킬 수 있는 빌미가 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무리한 근무 등이 발생하고 안전사고까지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부의 개선대책안이 휴일 및 야간실습, 연장실습을 금지하고 있으나 기업이 이를 어기더라도 처벌할 근거법령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정 의원 측은 “기업에서 불이익을 받는 학생이 있더라도 취업률 압박에 시달리는 학교 측에서 적극적으로 기업에 항의하지 못하는 일이 흔하다”고 말했다.

갈등을 빚은 학교를 담은 블랙리스트가 기업 간 돌고 있다는 말이 공공연히도는 상황에서 학생이 불이익을 받아도 묵인하게 된다는 주장이다.

전교조의 한 관계자는 “취업률을 무리하게 높이려다보니 학생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일단 현장실습을 나가 취업자로 집계됐다가도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곧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졸업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기업 현장제도의 문제점을 다룬 기획기사다.

헤럴드경제는 그런데 큰 제목을 「특성화高 높은 취업률 ‘빛좋은 개살구」라고 달았다.

기사는 일선 기업들이 관련법과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현장실습 환경이 열악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는데, 제목은 특성화고 졸업생들의 취업률에 부실이 내재된 것처럼 엉뚱한 곳을 지목한 것이다.

이 같은 제목은 『신문의 표제는 기사의 요약적 내용이나 핵심적 내용을 대표해야 하며 기사 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195 신문윤리강령 위반
한국경제 발행인 김 기 응

〈주 문〉

한국경제 2013년 8월 1일자 1면 「짚کم 대책·국회 몽니 … 주택시장 ‘녹초」
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한국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국회에 계류 중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법안이 빨리 통과돼야 주택시장이 숨을 쉴 겁니다.”(박창민 한국주택협회장)

31일 서울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과 건설사 사장단 간의 간담회에서는 부동산거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가 쏟아졌다. 당초 서 장관은 최근 내놓은 ‘4·1 부동산대책 후속조치’와 관련, 주택업계의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건설사 대표들은 미세한 대책도 필요하지만 시장 회복에 큰 영향을 미칠 핵심 정책의 신속한 실행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건설업계가 이처럼 정부를 상대로 ‘실효성 있는 정책의 신속한 실행’을 강력히 요구한 것은 주택시장 침체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서다. 새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4·1 부동산거래 활성화대책은 ‘반짝 효과’에 그쳤고 이후 6월 말 취득세 감면 종료로 주택거래는 빠르게 얼어붙고 있다.

시장 상황이 악화되자 국토부는 지난 24일 ‘4·1대책 실행방안’이란 명칭으로 추가대책을 선보였다. 하지만 거래 부진은 멈추지 않았다. 7월(30일 기준) 서울 아파트 거래는 1766건에 불과했다. 전달(9030건) 거래량의 20%에도 못 미쳤다. 작년 동기(2783건)보다는 36%나 줄었다.

정부도 취득세 감면 종료 후폭풍을 차단하기 위해 지방세인 취득세 영구 인

하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관련 부처 간 의견 조율도 잘 안되는 데다 지방자치 단체의 반발까지 더해지면서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도 국회는 부동산 활성화와 관련된 중요 법안들을 줄줄이 묶어 놓고 있다.

주택업계에선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이명박 정부 때 보였던 ‘미봉책 쏟아내기’와 ‘국회의 무책임한 발목잡기’ 등 ‘고질병’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5년 간 두 달에 한 번꼴로 27차례에 걸쳐 부동산대책을 쏟아내는 바람에 ‘부동산대책 정부’라는 소리까지 들었다.

전문가들도 새 정부 부동산대책의 ‘입법화 지연’이 장기화될 경우 주택시장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책 발표와 실행 시점 사이에 간격이 벌어지고 당·정·지자체 간 의견 대립이 격화 되면 시장의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한국경제는 위 기사에서 주택시장 침체 현상이 갈수록 심해져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이 시급한데도 국회에 계류 중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등 법안이 처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취지의 위 기사 내용과 그 표현에서는 신문윤리규정상 부적절한 대목을 찾을 수 없다. 그러나 「짚썴 대책·국회 몽니 … 주택시장 ‘녹초’」라는 위 기사의 제목에서 ‘국회 몽니’라는 표현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몽니’라 함은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할 때 권리를 주장하기 위하여 심술을 부리는 성질’을 말한다. 설사 국회가 계류중인 법안을 성실하게 처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심술을 부리는 성질’ 탓으로 단정할 수 있는 근거는 기사에 없다.

기사에는 『국회는 부동산 활성화와 관련된 중요 법안들을 줄줄이 묶어놓고 있다.』 『주택업계에선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이명박 정부 때 보였던 ‘미봉책 쏟아

아내기'와 '국회의 무책임한 발목잡기' 등 '고질병'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라는 기술만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같은 제목은 독자들에게 공연히 국회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가중시키며, 결국 신문의 책임과 신뢰·권위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2조 「언론의 책임」, 제4조 「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196 신문윤리강령 위반

1. 국민일보 발행인 김 성 기
2. 국제신문 발행인 차 승 민
3. 江原日報 발행인 이 희 종

〈주문〉

국민일보 2013년 7월 20일자 1면 「光州,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 유치 성공/실적 급급한 강운태 시장 정부보증 서류 위조했었다/정부, 姜시장 고발키로」 기사의 제목, 국제신문 7월 30일자 5면 「興, 참고인 채택 몽니 ... 표류하는 국정원 국조」 기사의 제목, 江原日報 8월 19일자 1면 「남북 이산가족 올 추석 금강산에서 만난다」 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국민일보, 국제신문, 江原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국민일보)= 『광주시가 논란 속에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에 성공했다. 하지만 대회유치 과정에서 정부의 재정보증 서류를 위조한 것이 드러나면

서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가 강운태 광주광역시장을 공문서 위조 혐의로 고발 방침을 밝힘에 따라 검찰수사 결과에 따른 후폭풍이 예상된다.

국제수영연맹(FINA)의 홀리오 마글리오네 회장은 19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총회에서 광주시가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최지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날 FINA 총회에서는 집행위원 투표 없이 2019년 대회는 광주시, 2021년 대회는 헝가리 부다페스트로 선정했다.

하지만 광주시는 지난해 10월 FINA에 대회 유치의향서를 제출하면서 정부의 재정지원 보증 서류에 김황식 전 총리와 최광식 전 문체부 장관의 사인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체부에 따르면 광주시는 ‘한국 정부가 2011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지원했던 금액(739억원)에 버금가는 재정지원을 할 계획’이라는 내용을 임의로 추가했고 당시 김 총리와 최 장관의 사인도 위조했다. 문체부는 지난 4월 FINA 현지 실사단이 정홍원 국무총리를 면담하는 과정에서 위조된 서류를 발견하고, 광주시에 이 사실을 통보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광주에서 개최지 결정이 날 때까지만 고발을 미뤄달라고 요청해 아직 고발하지 않았지만 이제 곧바로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면서 “광주시가 대회 유치에 성공했지만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22일 이번 사안과 관련한 공식 브리핑을 가질 예정이다.

이에 대해 강운태 시장은 바르셀로나에서 기자들과 만나 “FINA에 제출한 최종 서류는 법률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다만 초기 단계에 실무적으로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다. FINA 측도 이를 문제삼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7386421&cp=nv>>

(국제신문)= 『29일 국가정보원 국정조사가 가까스로 재개됐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증인·참고인 채택에 실패했다. 전날 정상화 합의를 놓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불만들이 노출되면서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국가정보원 댓글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위는 2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특히 내달 7~8일 청문회에 출석시킬 증인·참고인을 합의하지 못한 채 향후 국조 일정만 확정했다.

양당이 공통으로 신청한 18명의 증인은 사실상 합의됐다. 여기에 새누리당은 국정원 여직원 '인권유린' 혐의로 고발된 민주당 김현·진선미 의원을 증인으로 요구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인권유린 의혹에 연루된 증인 채택이 안 되면 이미 합의한 증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서도 합의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또 경찰청 축소 은폐 수사와 관련 '사전교감설'이 제기된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은 '정치공세'라며 일축하고 있다.

국조특위는 이날 8월 5일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기관보고를 받고 남재준 국정원장을 기관 증인으로 채택하며 7~8일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의결했다. 기관보고는 국정원장 인사말과 간부소개, 여야 간사 및 간사가 지명한 1인 등 총 4명의 기조발언만 공개되고 이후 기관보고와 질의응답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이런 가운데 야당 소속 국조특위 위원들은 전날 국정조사 정상화를 위한 여야 간사 간 합의내용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신경민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원칙적으로 비공개를 하고 필요 시 브리핑이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되면 브리핑을 거의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악마의 합의’가 도처에 숨어있다”고 지적했다.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은 국조특위 전체회의에서 “‘양념 반 후라이드 반’은 들었어도 ‘공개 반 비공개 반’은 처음”이라며 “반반도 아니고 사실상 비공개 합의로, 이번 사건의 주범인 국정원의 업무보고를 비공개로 한다는 것은 국정조사를 꺾게기로 만드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새누리당이 휴가를 이유로 기관보고 일정 연기를 요구하고 민주당이 이를 수용해준 것을 놓고도 뒷말이 나온다. 박영선 의원은 한 라디오에서 “그분들을 납치해서 모셔올 수도 없는 것 아니냐”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국정조사가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을 파헤치려는 당초

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채 정부여당에 면죄부를 주는 요식행위로 전략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100&key=20130730.22005212301>〉

(江原日報)=『북한이 우리 정부가 제안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실무접촉 제안을 이틀 만에 수용했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18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오는 추석을 계기로 금강산에서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을 진행하며 10·4선언 발표일에 즈음하여 화상상봉을 진행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또 이틀을 위한 남북 적십자 실무회담은 “남측의 제안대로 23일에 개최하도록 하며 장소는 금강산으로 해 실무회담 기간 면회소도 돌아보고 현지에서 그 이용 대책을 세우도록 한다”라고 제의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추석을 전후한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을 23일 판문점 내 우리 측 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가질 것”을 북측에 공식 제의했다.

조평통은 이와 함께 이산가족 상봉 실무접촉 전날인 이달 22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회담도 열자고 제안했다.

조평통 대변인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북남 당국 실무회담을 개최하도록 한다”며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회담에서는 관광객 사전 재발방지 문제, 신변안전 문제, 재산 문제 등 남측의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협의해결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실무회담 날짜는 22일로 하며 회담장소는 금강산으로 할 것을 제의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에 대해 “이산상봉 회담을 당초 남측이 제안한 판문점에서 개최하길 거듭 제안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북한의 발표 직후 “오늘 북한이 발표한 이산상봉 및 금강산관광 관련 조평통 대변인 담화문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것”이라며 “금강산 관광 재개 회담 수용여부는 추후에 밝힐 것”고 덧붙였다.』

〈<http://www.kwnews.co.kr/nview.asp?s=101&aid=213081800155>〉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국민일보의 위 기사는 광주광역시가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재정지원 보증서류를 위조한 사실이 드러났다는 내용이 골자다.

기사에 따르면 광주시는 지난 해 10월 국제수영연맹(FINA)에 대회 유치의향을 제출하면서 정부의 재정지원 보증서류에 ‘한국 정부가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 대회에 지원했던 금액(739억원)에 버금가는 재정지원을 할 계획’이라는 내용을 임의로 추가하고 김황식 당시 국무총리와 최광식 당시 문체부장관의 사인을 위조해 집어넣었다는 것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지난 7월 19일 광주시가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최지로 확정됐다고 국제수영연맹이 발표한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국민일보는 동일자 신문 3면 해설기사에는 지난 4월 세계수영연맹 실사단이 정홍원 국무총리를 면담하는 과정에서 위조 사실이 드러났으며, 총리실의 지적에 따라 광주시는 지난 4월의 유치의향서 중간본과 6월 17일 최종본에는 재정지원 보증서 내용을 처음에 승인받은 대로 고쳤다는 광주시 관계자의 설명을 소개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대회 유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 컨설팅사가 제안을 받아 실무직원이 총리 서명 원본에 일부 문장을 첨가해 제출하게 됐다”면서 실무자의 과욕에 따른 실수라고 말했다고 해설기사는 전했다.

그런데 국민일보는 1면 중간으로 내보낸 위 적시 기사 큰 제목을 「실적 급급한 강운태 시장 정부보증 서류 위조했었다」라고 인용부호도 없이 단정해 달았다. 제목대로라면 문제의 정부 재정보증 서류를 위조한 ‘주범’은 강운태 시장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위 기사와 3면 해설기사 어디에도 강운태 시장이 실적에 급급해 했으며, 정부 보증 서류를 위조했다는 내용은 없다.

국제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7월 29일 국가정보원 국정조사 진행상황을 보도했다. 핵심 내용은 이 시점에서 국정조사가 가까스로 재개됐지만 여야간 이

견으로 증인과 참고인 채택에 실패했다는 것이다.

국제신문은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입장과 주장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국정원 여직원 ‘인권유린’ 혐의로 고발된 민주당 김현, 진선미 의원을 증인으로 요구하면서 증인채택이 안되면 이미 합의한 증인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관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서도 합의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경찰청 축소 은폐 수사와 관련 ‘사전교감설’이 제기된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고, 이에 새누리당은 ‘정치공세’라며 일축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편집자는 이러한 새누리당의 주장과 입장을 ‘참고인 채택 몽니’라고 자의적으로 해석, 「與, 참고인 채택 몽니 … 표류하는 국정원 국조」로 큰 제목을 달았다. 기사 본문에도 없는 ‘몽니’라는 자극적인 표현을 담아 제목을 단 것은 편향된 시각과 가치판단 때문이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다.

江原日報의 위 적시 기사는 북한이 우리 정부의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실무 접촉 제안을 수용하고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회담 개최를 제안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북한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대변인 담화를 통해 우리 정부의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실무접촉 제안을 수용했다. 또 추석을 계기로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처럼 보도시점에서 ‘금강산에서의 이산가족 상봉’은 북한의 제안일 뿐 남북이 합의한 내용은 아니다. 남북간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 합의는 이 보도 후 4일 만인 23일 이뤄졌다.

그런데도 편집자는 북한의 제안 내용만 가지고 남북이 합의한 것처럼 「남북 이산가족 올 추석 금강산에서 만난다」고 단정적으로 달았다.

따라서 위 신문들의 기사 제목은 선부른 선입견이나 편견에 따라 과장·왜곡돼 작성됐다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이 같은 제목 달기는 보도의 객관성과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226 신문윤리강령 위반
경향신문 발행인 송 영 승

〈주문〉

경향신문 2013년 9월 11일자 1면 「교학사 교과서, 후소샤 것보다 더 ‘친일’/
‘강화도조약’ 일본 입장 기술」 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경향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역사왜곡·표절 의혹이 제기된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가 구한말 강화도조약
과 일제강점기 철도사업 등에서 일본의 극우 성향 후소샤(扶桑社) 교과서보다
도 강하게 일본 측 입장을 기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종환 민주당 의원은 10일 “교학사 교과서는 강화도조약에 대해 개혁파의
주장과 고종의 긍정적 인식으로 체결됐다고 서술하고 있다”며 “이는 강화도조
약은 조선에 국교 수립을 강요한 불평등 조약이라고 기술한 후소샤 교과서보
다 훨씬 일본 측 입장을 반영한 기술”이라고 밝혔다.

일제의 철도사업에 대해서도 교학사 교과서는 “1900년대 초에 개통된 철도
는 일본으로 쌀과 면화 등을 실어나르고… 철도를 이용하여 먼 거리 여행도 가
능해졌다… 이에 따라 새로운 공간관념이 형성되었다”고 긍정적으로 서술했다.
후소샤 교과서는 “한국 병합 후 일본은 식민지 조선에서 철도·관개시설을 정비
하는 등 개발을 행하고”라고 기술했다. 국내 다른 교과서들은 “일제가 철도를
부설하는 과정에서 토지를 헐값이나 무상으로 수용하고 노동력을 수탈해 농
민의 저항을 받기도 했다. 호남평야의 쌀과 북부지방의 물자를 수탈할 목적으
로…”라며 수탈 목적이 있었음을 분명히 했다.

한국역사연구회·역사문제연구소·역사학연구소·민족문제연구소 등 역사학
계는 이날 오후 교학사 교과서에 대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근현대사뿐 아니
라 고대사까지 70페이지 분량의 학술적 사실·통계 오류가 나왔다고 공개했다.

하일식 한국역사연구회 회장은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는 고대사부터 현대사까지 왜곡과 오류로 점철된, 교과서로 부르기도 민망한 책”이라며 “교학사 교과서를 둘러싼 논란은 상식과 몰상식의 문제”라고 말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9110600055&code=940401)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경향신문의 위 기사는 ‘우편향’ 논란을 빚고 있는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가 구한말 강화도조약과 일제 강점기 철도사업에 대해 기술하면서 일본의 극우 성향 후소샤 교과서보다도 강하게 일본 측 입장을 반영했다는 민주당 도종환 의원의 주장 등을 전하는 스트레이트 기사다.

기사가 전한 도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교학사 교과서는 강화도 조약이 개척파의 주장과 고종의 긍정적인 인식에 따라 체결됐다고 서술했는데, 이는 조선에 국교수립을 강요한 불평등 조약이라고 기술한 후소샤 교과서보다 훨씬 일본 측 입장을 반영했다는 것이다. 또 일제의 철도사업에 대해서도 교학사 교과서는 “1900년대 초에 개통된 철도는 일본으로 쌀과 면화 등을 실어나르고… 철도를 이용하여 먼 거리 여행도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새로운 공간관념이 형성되었다” 등 후소샤 교과서에 비해 긍정적으로 서술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편집자는 기사 큰 제목을 인용부호도 없이 「교학사 교과서, 후소샤 것보다 더 ‘친일’」이라고 단정적으로 달았다. 제목만 놓고 보면 교학사 교과서의 일본에 대한 서술 전반이 ‘친일’인 것처럼 여길 수밖에 없다. 하지만 도 의원이 문제를 삼은 것은 강화도 조약과 철도 사업 등 두 가지 사실이며, 그것도 주장일 뿐이지 객관적 결론이 내려진 것이 아니다. 그리고 기사 본문에는 일본 측 입장을 많이 반영했다는 지적만 나왔지 ‘친일’이라는 표현은 없다. 그런데도 해당 교과서가 마치 ‘친일’ 일색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제목을 단 것은 지나친 논리 비약이고, 객관적 사실보도의 범주를 벗어났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기사의 제목은 사건이나 편견에 따라 과장됐다는 의혹을 살 소지

가 크고, 이 같은 제목 달기는 보도의 공정성과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227 신문윤리강령 위반
문화일보 발행인 이 병 규

〈주문〉

문화일보 2013년 8월 27일자 10면 「“원세훈, ‘從北딱지’ 붙이는 新 매카시즘 구사”/檢, 부적절한 초강경 표현 왜?/국정원 댓글사건 첫 공판/공소유지에 檢 사할 걸려」 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유〉

1. 문화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검찰이 지난 26일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사건 첫 공판에서 이례적으로 ‘중북(從北) 딱지 붙이기’ ‘신종 매카시즘’ 등의 용어까지 사용하며 초강수를 둔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이 국정원 심리전단의 댓글 활동을 이같이 표현한 것과 관련, “국정원의 정치관여와 대선개입을 비유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부적절한 표현”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북 개념에 대한 시각 차= 검찰이 국정원 심리전단의 활동을 신종 매카시즘에 비유한 이유는 그만큼 중북이라는 개념과 중북세력에 대한 대책, 국정원의 직무범위 등을 둘러싸고 원 전 원장 측과 현격한 시각 차이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한마디로 “원 전 원장이 그릇된 중북관을 갖고 적이 아닌 일반 국민을 상대로 여론·심리전을 벌였다”는 입장이다. 야당이 제주도 해군기

지 예산안 처리를 보류한 것을 포함, 정부 여당의 정책에 반대하거나 북한과 유사한 주장을 한 것 역시 중복좌파로 몰아갔다는 것이다. 반면 원 전 원장 측은 “북한의 지시를 받아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자, 북한과 관련이 없더라도 북한 생각에 따르는 세력은 중복좌파”라고 공판에서 밝혔다. 원 전 원장 측은 특히 “중복 좌파 세력의 주장이 정부 시책에 반대하는 야당의 의견과 의견상 비슷할 수도 있어 야당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를 엄격하게 구분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국정원 직무범위에 대한 견해 차= 국정원의 직무 범위와 관련해서 검찰은 국정원법 3조 1항의 규정에서 벗어날 경우 입법취지에 배치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국정원법 3조 1항은 ‘국외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인터넷 공간에서 북한의 허위 선전선동 활동이 있더라도 관계기관에 통보해야지 일반 국민을 상대로 여론전을 펼쳐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원 전 원장 측은 “국가안전보장이라는 국정원의 기본 업무를 염두에 두면 사이버 활동은 국정원 고유업무에 속하는 정당한 활동”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국정원은 인터넷상에 문제의 글을 쓴 아이피를 추적해보니 상당 부분 북한의 지령 받은 사람들이라고 판단하는 만큼 이를 정치관여나 선거개입이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글을 쓴 이들이 일반인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 공소유지에 사할 걸려= 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유지에 사할을 걸고 있는 것도 검찰이 총공세를 펼치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원 전 원장에게 적용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면 검찰 수뇌부와 수사팀으로서 박근혜정부 정통성 논란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여당과 청와대의 압박을 버텨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30827010710272550020>>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문화일보의 위 기사는 검찰이 ‘국가정보원 정치·대선 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첫 공판에서 ‘종북(從北) 딱지 붙이기’ ‘신종 매카시즘’ 등의 강한 표현을 곁들여 원 전 원장 측을 공박한 이유와 배경을 분석한 해설기사다.

그런데 편집자는 기사 큰 제목을 「檢, 부적절한 초강경 표현 왜?」라고 인용 부호도 없이 단정적으로 달았다. ‘종북딱지 붙이는 신종 매카시즘 행태’라는 검찰 측 표현을 부적절한 것으로 단정해 버린 것이다.

기사 본문에는 『“국정원의 정치관여와 대선개입을 비유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부적절한 표현”』이라는 『법조계 일각』의 의견이 소개돼 있을 뿐이다.

따라서 위 기사 제목은 ‘법조계 일각’의 주장이 편집자의 편견이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객관화된 평가인 것처럼 과장됐다는 지적을 받을 소지가 크고, 이 같은 제목 달기는 보도의 공정성과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233 신문윤리강령 위반

중부일보 발행인 임 재 울

〈주문〉

중부일보 2013년 9월 3일자 23면 「학교숙원 공약 받으며 ‘4천여 학생票’ 불모로」 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중부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성균관대)가 기숙사 필수 입사 필수조건으로 ‘주소지 이전’을 내걸면서 학생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일부에서는 4천여명에 달하는 성균관대 기숙사 입주 학생들을 학교측이 표심으로 이용,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일 성균관대와 재학생에 따르면 성대 기숙사인 봉룡학사 입사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주소지 이전을 필수로 해야한다.

학교의 입사조건에 따라 봉룡학사에 입사한 학생들은 입사 이후 열흘 이내에 주민등록 이전 사항이 명시된 주민등록 등본 1부를 학교에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4천여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수원시 장안구의 투표권자가 되고 있으며, 각종 선거때마다 성균관대의 표심을 잡기 위한 공약으로 남발되고 있다.

지난 10.28 재보권선거 당시 당선된 이찬열 후보는 성균관대 역사 민자유지, 성균관대 BTO산업과 연계된 사업개발, 기숙사 후면 방음벽 설치·전기료 인하를 공약 등을 내세워 성균관대 표심잡기에 올인했다.

또 경쟁후보였던 박찬숙 후보도 성균관대 앞 문화창조지대 조성과 기숙사후면 방음벽 설치, 전기료 인하 등의 공약을 내세웠으며, 안동섭 후보는 성균관대의대부속병원 유치를 발표했다.

성균관대 학생들의 표심이 당락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후보들은 재학생들을 겨냥한 공약을 내건 것이다.

그러나, 성균관대가 기숙사 필수 입주조건으로 거주지 이전을 강요하면서 학생들은 일면식도 없는 수원지역 후보자들에게 투표를 하게되는 기 현상이 벌어진 셈이다.

기숙사 입주조건으로 ‘주소지 이전’을 내건 대학을 관내 대학 중 성균관대가 유일했으며, 수원권 선거 후보자 가운데 특정대학과 관련된 공약을 내세운 것도 성균관대가 유일하다.

성균관대 기숙사에 거주하는 재학생 이모(23)씨는 “대부분의 생활은 기숙사보다는 부모님과 거주하는 집에서 이뤄지는데 주소지 이전을 해 놓아 불편한 부분이 적지 않다”며 “하지만 기숙사 입사를 위해서는 감수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성균관대 관계자는 “국민법에 의거해 30일 이상 거주할 경우 이전할 곳으로 주소지를 이전해야 한다”며 “기숙사에 입사하기 위해서는 주소지를 필수로 이전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이는 학교를 위해서가 아니라 학생들을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876689>)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중부일보의 위 기사는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가 기숙사 입사 필수조건으로 ‘주소지 이전’을 내걸면서 학생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는 내용이다. 기사에 따르면 기숙사 입사한 학생들은 입사이후 열흘 이내 기숙사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이전한 뒤 해당 주민등록등본을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으로 입사한 기숙사 학생은 4천여명이다. 이들은 주소지를 옮긴 탓에 수원시 장안구의 투표권자가 됐으며, 정치권은 이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성균관대와 관련된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학생들은 주소지 이전으로 불편한 부분이 적지 않지만 기숙사 입사를 위해 감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사는 이에 따라 두 번째 리드부분에서 『일부에서는 4천여명에 달하는 성균관대 기숙사 입주 학생들을 학교측이 표심으로 이용,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라고 보도했다. ‘일부의 지적’임을 내세우며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에 학교측은 기사에서 『“국민법에 의거해 30일 이상 거주할 경우 이전할 곳으로 주소지를 이전해야 한다”며 “이는 학교를 위해서가 아니라 학생들을 위한 조치”』라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도 편집자는 「기숙사 입사 최우선 조건 ‘주소지 이전’ 왜?」라는 어색한 제목에, 큰 제목을 「학교숙원 공약 받으려 ‘4천여 학생票’ 볼모로」라고 인용부호도 없이 단정적으로 달았다. 제목대로라면 학교 측은 정치권으로부터 학교숙원 공약을 받기위해 주소지 이전을 통해 기숙사 학생 4천여명을 볼모로 삼고 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기사 본문에는 정치권에서 성대 학생들의 표를 겨냥

해 공약을 내놓고 있다는 기술뿐, 학교 측이 정치권으로부터 학교숙원 공약을 받기 위해 주소지 이전을 강요하고 있다는 내용은 없다. 또 ‘볼모’라는 표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떠한 내용도 없다.

따라서 위 기사의 제목은 편집자의 성급한 예단에 따른 과장되고 선정적인 제목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우며, 이러한 보도 행태는 신문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253 신문윤리강령 위반

1. 全羅日報 발행인 유 춘 택
2. 중부일보 발행인 임 재 울

〈주문〉

全羅日報 2013년 10월 10일자 1면 「7년간 유치기업 10곳 중 5곳 문 닫았다」 기사의 제목, 중부일보 10월 18일자 23면 「도내 10대 청소년 10명중 6명 ‘게임 중독’」 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全羅日報, 중부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全羅日報) = 『신규기업 유치에 도정이 집중됨에 따라 기존 기업이 정책적 배려를 받지 못하고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8일 전북도에 따르면 민선 4기가 출발한 지난 2007년부터 올해 9월 말 현재 까지 전북에 유치한 기업은 모두 846개로 집계됐다.

2007년 178개를 비롯해 2008년 101개, 2009년 102개, 2010년 126개, 2011년 122개, 2012년 123개에 이어 올해 9월 말 현재까지 94개의 기업을 유치하는 등 6년 연속 100개 이상의 기업을 유치하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올해는 중국 등 해외로 진출했다가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기업’ 유치를 위해 전용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유치대상 업종도 확대했다. 또 고용보조금, 특별입지보조금, 투자보조금 등의 혜택을 앞세워 유턴기업을 공략하고 있다.

그러나 2007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휴·폐업한 도내 기업체는 모두 451개사에 달해, 신규기업 유치에만 공을 들일뿐 정작 지역에 있는 기존 업체 관리에는 소홀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실제 도내에서만 지난 2007년 86개 업체가 휴·폐업했으며, 2008년 84개, 2009년 73개, 2010년 70개, 2011년 53개, 2012년 41개가 휴·폐업 됐고 올해 6월말 현재는 44개 업체가 문을 닫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07년부터 올 9월 말까지 846개 기업이 유치된 반면, 451개 기업이 문을 닫아 통계상으론 기업유치 수 대비 휴·폐업 비율이 53.3%에 달하고 있는 셈이다. 즉, 도내에 10개 기업이 유치되는 동안 5개 기존 기업들이 경영난 등 각종 이유로 문을 닫은 것이다.

따라서 도내 기업들의 기업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맞춤형 마케팅 지원과 단기자정지원 등 효율적인 정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역 경제계의 한 관계자는 “도의 기업 유치 실적은 전국적으로도 결코 떨어지지 않는 성과인 것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휴·폐업으로 인한 근로자 실직 사태 등 엄청난 사회적 손실 비용이 발생했다”며 “현행 기업 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기업애로 현장행정 등을 통해 휴·폐업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고 이로 인한 도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분석해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부일보)= 『# 취업 실패 때문에 … 수원시 정자동에 살고 있는 남모(29·무직)씨는 10대 시절부터 게임 중독에 빠졌다. 게임방에서 밤을 새는 날이 많다보니 학교를 빠지는 날도 많았고 수업시간에는 부족한 잠을 채우는 시간으로 전락했다.

군대를 다녀오고 대학교에 진학하면서 다행히 게임 중독 현상이 줄었지만 2011년 대학을 졸업한 후 취업에 실패하자 달콤한 게임에 안주하기 시작했다.

결국 남씨는 심각한 게임 중독에 빠져 부모님께 받는 용돈 2만원으로 PC방에서 끼니를 때우고 하루종일 게임을 하면서 보낸다.

학업 스트레스 때문에 ... 이달 초 피씨방에서 게임을 하다 쓰러져 정신을 잃은 이모(16)군은 축구게임인 ‘피파온라인’의 고수다.

현실에서는 학업에 대한 무게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지만 온라인 세상에서 이 군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 게임에서 쉽게 맛 본 승리의 쾌감은 이군을 공부와 점점 멀어지게 하는 계기가 됐다.

학원도 가지 않고 독서실에 간다는 거짓말로 부모님의 감시에서 벗어난 이군은 하루라도 게임을 하지 못하면 예민해지는 게임 중독에 빠졌다.

이군은 학원도 빼먹고 안산시 상록구의 한 PC방에서 7시간이 넘도록 게임을 하던 중 눈앞이 갑자기 흐려지면서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됐다.

도내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이 걱정의 수준의 넘어 큰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해마다 게임 중독에 빠지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어서다.

17일 경기인터넷중독대응센터에 따르면 도내 청소년들 가운데 온라인 게임과 스마트폰 게임 중독 현상이 해마다 8.6%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 중독에 빠진 청소년들 중 10대 청소년들은 비율은 절반이 훌쩍 넘는 59.3%에 이른다.

이들 중 자신이 인터넷 게임에 중독된 것을 알지만 게임 금단 현상이 심각해 게임을 포기하지 않는 경우가 87.7%에 이른다.

경기인터넷중독대응센터 관계자는 청소년기 부터 게임 중독 증상을 보이면 점차 커가면서 현실감각이 떨어져 성인이 됐을 때 사회성결여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앞선 남씨와 같이 성인 게임중독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39.9%가 만 10세 이전에 인터넷 게임을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인터넷중독대응센터 이현센터장은 “게임중독 증상이 저연령화 되면서 사회성 발달 장애나 안전불감증이 늘고 있다”며 “주위에서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 위 기사들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全羅日報는 상기 1면 머리기사에서 큰 제목을 「7년간 유치기업 10곳 중 5곳 문 닫았다」로 뽑았다. 또 작은 제목을 「2007년부터 846개 기업 유치/경영난 이 유 휴·폐업 451곳」으로 달았다. 제목만 보면 유치기업 가운데 절반이 문을 닫았고, 휴·폐업한 451곳도 유치기업으로 오해하기 십상이다.

그러나 본문을 보면 휴·폐업한 451개사는 유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기간에 전북도내에서 문을 닫은 기업체들이다. 기사는 『2007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휴·폐업한 도내 기업체는 모두 451개사에 달해, 신규기업 유치에만 공을 들일뿐 정작 지역에 있는 기존 업체 관리에는 소홀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고 밝혀 신규 기업 유치 활동뿐만 아니라 기존의 기업들의 유지를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위 기사의 제목은 본문 내용을 오해 또는 왜곡한 제목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중부일보는 위 기사의 큰 제목을 「도내 10대 청소년 10명중 6명 ‘게임 중독’」으로 뽑았다. 제목대로라면 경기도내 10대 청소년 가운데 60%가 ‘게임 중독’에 빠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사는 『게임 중독에 빠진 청소년들 중 10대 청소년들은 비율은 절반이 훌쩍 넘는 59.3%에 이른다.』고 보도하고 있을 뿐 게임 중독에 빠진 청소년들이 전체 청소년 가운데 몇 %인지에 대한 설명은 없다. 따라서 기사에는 ‘도내 10대 청소년 10명중 6명’이 게임 중독에 빠졌다는 위 제목을 뒷받침하는 내용은 없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의 2012년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10대의 인터넷 중독률은 10.7%이고, 이들 중독자 가운데 온라인 게임 이용자는 59.3%다. 따라서 10대 인터넷 중독자 가운데 59.3%, 전체 10대의 6.3%가 온라인 게임에 빠져있는 셈이다. 이 조사결과를 감안하면 위 제목은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이다. 때문에 위 제목은 본문 내용을 왜곡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두 신문의 이러한 보도 행태는 신문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279 신문윤리강령 위반
한국경제 발행인 김 기 응

〈주 문〉

한국경제 2013년 10월 28일자 1면 「특하면 세무조사 … 국회는 죄인 취급/기업인 82% “기업가 정신 위축”」 기사의 제목에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한국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기업은 국세청 세무조사 받고 기업인은 국회에 불려다니며 준범죄인 취급을 받잖아요. 정치와 사회가 경제를 짓누르면서 기업가정신의 불씨를 퍼뜨리는 게 아니라 끄고 있어요.”

원로 경제학자인 송병락 서울대 명예교수는 27일 “지금은 기업전쟁 시대인데 우리 사회가 기업가의 중요성을 너무나 모른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기업인들 스스로도 ‘기업가정신’이 급속히 퇴조하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올해로 6회째인 기업가정신주간(10월28~31일)을 맞아 한국경제신문이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기업 최고경영자(CEO) 204명을 대상으로 벌인 전화 설문조사(23~25일) 결과 응답자의 81.9%(167명)가 “한국의 기업가정신이 위축됐다”고 답했다.

그 이유(복수응답)로는 ‘대내외 리스크 증가 및 경기 위축’(69.1%)이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기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규제와 제도(30.9%) △기업인들의 위험감수·도전정신 감소(27.9%) △노사 문제(21.6%) △단기실적 중심의 경영 형태(13.7%) △기업에 대한 부정적 사회 분위기(9.3%) 등의 순이었다.

현재의 기업가정신에 대해 점수를 매겨 달라는 질문에는 평균 6.38점(10점 만점)을 줬다.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64점가량으로 낙제점에 가깝다. 4명 가운데 1명(25%)은 5점 이하로 평가했다.

기업가정신을 되살리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50.5%)을 꼽았다. ‘기업인들의 노력’(22.1%)과 ‘친기업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17.6%),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9.8%)이 필요하다는 답변도 나왔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정부와 정치권이 기업과 기업인을 규제만 할 게 아니라 격려할 수 있는 제도와 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계에서도 꺼져가는 성장 엔진에 불을 댕기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선 위험을 무릅쓰고 창조와 혁신을 이뤄내려는 도전의식인 기업가정신을 시급히 되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제관료는 물론 국회 차원에서 기업가정신을 되살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경제가 활력을 찾을 것이란 지적이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한국경제가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기업 최고경영자(CEO) 204명을 대상으로 벌인 전화 설문조사(23~25일) 결과를 보도한 것이다. 위 기사는 조사결과 응답자의 81.9%(167명)가 “한국의 기업가정신이 위축됐다”고 답했다는 등의 내용을 전하면서 기업가 정신을 되살리기 위해 재계 자체는 물론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한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그런데 위 기사는 리드 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송병락 서울대 명예교수의 말을 인용했다. 『“기업은 국세청 세무조사 받고 기업인은 국회에 불러다니며 준범죄인 취급을 받잖아요. 정치와 사회가 경제를 짓누르면서 기업가정신의 불씨를 퍼뜨리는 게 아니라 끄고 있어요.”』 『“지금은 기업전쟁 시대인데 우리 사회가 기업가의 중요성을 너무나 모른다”』

위 기사는 『“... 세무조사 받고 ... 준범죄인 취급을 받잖아요 ...”』라는 송 명예교수의 주관적 견해를 과장해 「“특하면 세무조사 ... 국회는 죄인취급”이라는 제목으로 달면서 마치 이것이 객관적 사실인 것처럼 인용부호도 달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제목으로 「기업인 82% “기업가 정신 위축”이라는 내용을 달아 마치 기업가 정신이 위축된 이유가 ‘특하면 당국이 세무조사를 하고

국회가 죄인 취급을 하기 때문'인 것처럼 왜곡했다.

이는 편집기자가 제목을 달면서 객관적 사실과 기자 의견을 제대로 구분하지 않고 기사 내용을 왜곡·과장함으로써 보도의 기본 원칙인 정확성과 객관성, 공정성을 위반한 것이다. 또 신문의 표제는 기사의 요약적 내용이나 핵심적 내용을 대표해야하며 기사 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해서는 안된다는 신문윤리실천요강을 어긴 것이다. 이는 신문의 책임과 권위, 독자의 알 권리를 크게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2조 「언론의 책임」, 제4조 「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280 신문윤리강령 위반

헤럴드경제 발행인 이 영 만

〈주문〉

헤럴드경제 2013년 11월 18일자 4면 「“국정 난맥상 주범은 입법지연” 국회 사보타지에 쓴 소리」 기사와 제목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헤럴드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18일 취임후 첫 시정연설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민생관련 법안통과 지연, 대통령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여야간 정쟁 등 ‘국회 사보타지’에 대한 우려와 국회정상화를 담았다. 박 대통령은 또 잘못된 과거와의 단절을 강조, 공기관의 방만경영 등 그동안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도 시정되지 않은 각종 비정상적인 관행과의 전면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30여분간에 걸친 시정연설 대부분을 경제 및 민생관련 입

법안의 국회 통과 촉구에 할애했다. 취임 후 9개월간 국정운영의 제1 난맥상으로 '입법 지연'을 지목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경제부흥과 관련,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은 국회와 정부, 여와 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외국인투자촉진법, 관광분야 투자활성화 법안, 주택관련 법안, 중소기업 창업지원 법안 등 국회에서 낚잠자고 있는 경제 및 민생 관련 법안에 대해 일일이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또 경제부흥과 함께 4대 국정기조로 꼽히는 ‘국민행복’과 ‘문화융성’과 관련해서도 현재 계류중인 법안을 거론했다.

청와대와 정부는 최근들어 “내년 국정운영의 제1 목표점으로 두고 있는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창조경제를 통한 경제체질 전환 등의 첫 시발점도 국회 입법”이라면서 야당의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이런 법안들이 제 때 통과되지 못한다면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는 우리 경제가 다시 침체의 늪에 빠지게 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들 법안들이 꼭 통과되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는 박 대통령이 그간 “지금 정부와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10월 22일 국무회의)이나 “여전히 과거의 정치적 이슈에 묶여서 시급한 국정현안들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다”(10월 31일 대수비)며 목소리를 높인 것의 연장선상이다.

박 대통령은 또 민주당이 사사건건 자신을 정국의 중심으로 끌어들이려는 시도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정치의 중심은 국회”라며 “국회 안에서 논의하지 못할 주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무엇이든 국회에서 여야가 충분히 논의해서 합의점을 찾아주신다면 존중하고 받아 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한 채 국회가 국정원 댓글 의혹 및 국정원 개혁 등 각종 사안에 대해 자신과 청와대를 논의 중심으로 끌고 가려는 야당행동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로 문제를 가져오기 보다는 국회 내에서 합의를 통해 해결을 해줘야 국정운영도 원활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입법 촉구와 함께 시정연설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과거와의 단절이 새로운

국정운영의 시발점이 된다는 점이다.

박 대통령은 “이제 정부와 정치권 모두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국민을 위한 길에 함께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제 정치권도 모두가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미래를 열어 가는 길에 나서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박 대통령은 특히 “정부는 지난 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정상화시키는 데에 역점을 두고 새로운 변화와 도전을 추진할 것”이라며 “원전과 방위사업, 철도시설, 문화재 분야 등 각 분야의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비리들을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강조해 ‘비정상’의 정상화가 국정운영의 철학임을 재확인했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 해설한 것이다. 그런데 기사 제목인 「“국정 난맥상 주범은 입법지연” 국회 사보타지에 쓴 소리」는 기사 내용과 맞지 않는다.

위 기사 제목은 인용부호를 사용, 박대통령이 “국정 난맥상 주범은 입법지연”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으나 기사 본문 내용을 보면 박대통령의 발언 중 이같은 내용은 없다. 이같은 제목은 『신문의 표제는 기사의 요약적 내용이나 핵심적 내용을 대표해야 하며 기사 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해서는 안된다』는 신문 윤리실천요강을 어긴 것이다.

또 위 기사는 제목에서는 「“국정 난맥상 주범은 입법지연” 국회 사보타지에 쓴 소리」라고 표현했고 본문에서는 『경제·민생관련 법안통과 지연, 대통령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여야간 정쟁 등 ‘국회 사보타지’』라고 표현했다.

‘사보타지’의 사전적 의미는 ‘노동자가 일터에서 일을 하면서 일부러 작업 능력을 저하시켜 사용자에게 손해를 주는 행위’이다. 하지만 위 기사에서 국회의원들이 경제·민생 관련 법안을 처리하지 않거나 그 책임을 대통령에게 떠넘기면서 여야간 정쟁을 유발하는 일들이 국민들에게 손해를 끼치려고 고의적으로 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사보타지’라고 개념을 규정하는 것은 무리다.

이처럼 기사 본문에 없는 내용의 표제화나 잘못된 개념 규정은 편집기자나 취재기자가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지 않은 탓으로 일종의 왜곡이나 과장이 되기 때문에 독자들을 오도하고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2조 「언론의 책임」, 제4조 「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282 신문윤리강령 위반
문화일보 발행인 이 병 규**

〈주문〉

문화일보 2013년 11월 4일자 1면 「음주단속 경관 얼굴뼈까지 함몰시켰는데.../‘공권력 폭행’ 풀어주는 법원」 기사의 제목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문화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공무집행에 반발해 경찰관을 폭행, 중상까지 입히는 사건이 벌어졌지만 관할 법원이 구속영장 신청을 잇따라 기각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0월 19일 오후 11시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근처에서 음주단속을 하던 서울 동대문경찰서 소속 권모 경사는 운전자 황모(28) 씨에게 얼굴을 수 차례 맞아 안경이 깨지고 오른쪽 눈뼈에 골절상을 입는 큰 부상을 당했다. 진단 결과 5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고 당분간 업무를 볼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 씨는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에 걸려 면허취소 판정을 받자 권 경사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황 씨의 주거가 불확실하고 경찰관에게 중상을 입힌 점 등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북부지법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도 가능하다며 기각했다.

같은 달 29일에는 서울 강북경찰서 소속 장모 경장이 윤모(36) 씨에게 뺨을 맞는 등 폭행을 당했다. 윤 씨는 이날 오후 5시 45분 강북구 수유동의 한 모텔에서 난동을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장 경장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윤 씨는 “내가 마약을 했지만 곧 풀려날 거야”라고 소리치며 주먹질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윤 씨의 주거가 일정하지 않고 마약을 투약한 정황도 발견됨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역시 법원은 구속 사유가 없으며 기각했다.

경찰 폭행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법원에서 잇따라 기각되면서 일선 경찰들 사이에서 “경찰이 맞아도 구속조치 되지 않으니 힘이 빠지고 직업에 대한 회의가 들기까지 한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1년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1만2090건 중 피의자가 구속된 사건은 890건에 불과했다.

곽대경(경찰행정학) 동국대 교수는 “공권력을 무시하는 풍조를 방지할 경우 사회 전반에서 법질서를 확립하기 어려워지고 결국 국민 개개인에게 피해가 돌아간다”고 말했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음주단속 경찰관을 폭행해 5주 진단의 상처를 입힌 음주 운전자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실 등 구속 영장 기각 사례 2건을 다루었다. 위 기사는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불구속 기소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전하면서 이같은 법원의 조치에 대해 비판조로 서술했다.

그러면서 「‘공권력 폭행’ 풀어주는 법원」이라는 제목을 달았다. 하지만 이같은 제목은 범죄 피의자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원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범죄 피의자에 대해서는 불구속수사·불구속재판이 원칙이다.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구속 조치 자체를 일종의 처벌로 여기는 경향이 있고 또 수사기관은 수사의 편의를 위해 구속수사를 지향하고 있지만, 모든 피의자에 대해서는 확

정판결이 나기 전까지 무죄추정이 원칙이다. 이에 따라 법원은 구속영장을 처리할 때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큰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며 우리 법원은 인권보호를 위해 갈수록 불구속 재판을 늘리겠다고 천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위 기사 제목은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해서 ‘공권력 폭행을 풀어주는 법원’이라고 비판했다.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는다 해도 피의자에게는 재판결과가 남아있기 때문에 「공권력 폭행을 풀어준다」는 제목은 사리에 맞지 않는 표현이다.

이 같은 제목 달기는 보도의 정확성과 객관성, 공정성을 어기는 것으로 신문의 책임과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2조 「언론의 책임」, 제4조 「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287 신문윤리강령 위반

부산일보 발행인 이 명 관

〈주문〉

부산일보 2013년 10월 30일자 4면 「제3정부통합전산센터유치/‘입지 부산’ 이냐 ‘로비 대구’냐?」 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유〉

1. 부산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생산유발효과가 1조 원이 넘는 제3정부통합전산센터(이하 제3센터) 유치를 놓고 부산시와 대구시가 막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최근 현장실사를 완료하고 조만간 제3센터 입지를 발표할 예

정. 부산시와 대구시, 강원도 춘천시, 제주도, 경남 진주시 등 5개 지자체가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부산과 대구가 사실상 2파전을 치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통합전산센터는 50여 개 중앙행정기관의 1천여 개 전자정부 업무시스템을 통합 관리, 운영하는 시설로 연간 운영비만 1천억 원에 달한다.

관리를 맡은 공무원 이외에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외주업체 인원까지 900여 명의 근로자가 필요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1조 2천억 이 넘는다. 현재 1센터는 대전에, 2센터는 광주에 위치해 있다. 정부는 기존 센터가 2~3년 내에 포화상태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돼 제3센터 건립에 나서고 있다.

이 때문에 각 지자체들이 사활을 걸고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

특히 지난 2005년 제 2센터 유치 실패 이후 제 3센터 유치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대구시는 김범일 시장이 직접 나서는 등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안행부의 전신인 행정자치부 기획관리실장 출신인 김 시장은 '인적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유치경쟁에서 앞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부산의 경우 입지조건의 우위를 내세우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입지 평가위원들은 부산 현장실사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면서 "안행부는 대구를, 평가위원들은 부산을 선호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부산시는 당초 강서구 미음지구에 유치를 추진했으나 입지 결정에 '보안성'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를 들어 입지 제안서 제출 직전 후보지를 해운대로 바꾸는 '강수'를 두기도 했다.

부산시가 후보지로 내세운 해운대구 좌동 달맞이공원 내 53사단 옛 훈련장 일대는 보안성이 뛰어나고 도심과의 접근성도 탁월한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국외와 연결된 해저 케이블이 들어오는 송정에 데이터베이스 망 기지가 있는 것도 큰 장점으로 꼽힌다.

부산시는 또 지역 정치권에 의지하는 유치전략을 펴고 있다.

후보지를 해운대로 옮기면서 지역에 근거를 둔 새누리당 서병수 의원에게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는 한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영주

의원에게도 공정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감시해 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내년 부산시장 선거의 후보 가운데 한 명인 서 의원의 경우 제 3센터 유치에 성공할 경우 지역 유권자는 물론 부산의 전체 유권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심어줄 수 있을 전망이다. 실제로 부산시 관계자는 “서 의원이 여러 경로로 관계자들과 접촉하며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제 3센터가 부산으로 오게 되면 고용·생산유발효과는 물론 지역 IT산업 활성화, 해운대 달맞이공원 인근 개발 활성화도 탄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 20131030000094>>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부산일보의 위 기사는 생산유발효과가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제3정 부통합전산센터의 유치를 놓고 부산시와 대구시가 막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을 분석한 해설기사다.

기사는 그러나 대구시인 경우 자치단체장의 활동만 간략하게 소개한 반면, 부산시에 대해선 입지조건에서 우위에 있다는 점을 상세히 보도했다. 때문에 두 경쟁도시에 대해 공정한 자세로 보도에 임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게다가 편집자는 「제3정부통합전산센터유치/‘입지 부산’이나 ‘로비 대구’냐?」로 큰 제목을 뽑았다. 제목만 보면 부산은 입지조건상 우위에 있고, 대구는 ‘로비전’으로 맞서고 있다는 내용인 셈이다.

‘로비’라는 표현은 본문에도 없는 내용이다. 기사는 『안행부의 전신인 행정자치부 기획관리실장 출신인 김범일 대구 시장이 ‘인적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유치경쟁에서 앞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기술했을 뿐이다. 이를 두고 ‘로비’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다. 또한 대구시와 마찬가지로 부산시 역시 지역 정치권에 의지하는 유치 전략을 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미국 영국 등과 달리 ‘로비’가 합법화되지 않은 나라다. ‘로비’에

대한 국민의 감정도 부정적이다. 제목의 ‘로비 대구’는 ‘로비’를 하는 대구시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제목은 기사 내용을 과장한 것이며, 객관적 근거 없이 편견과 선입견을 지나치게 앞세운 제목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 같은 제목 달기는 신문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313 신문윤리강령 위반
서울경제 발행인 김 인 영

〈주문〉

서울경제 2013년 12월 6일자 1면 「기업 쥐어짜더니 나라 곳간만 축났다」 기사의 제목에 ‘주의’ 조처한다.

〈이유〉

1. 서울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금융소득을 비롯한 ‘부가수입’을 제외하고 기업들이 순수하게 장사를 해 번 돈으로 내는 법인세 신고액이 내년에 4년 만에 뒷걸음질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정부가 기업들의 투자·고용환경을 개선하지 않고 경제민주화를 명분으로 기업 때리기를 계속하는 한편 고강도 세무조사 등을 통해 쥐어짜기식의 조세정책을 펴봤자 세금이 더 걷히기는커녕 나라 곳간만 축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준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세금수입 중 법인세 신고액을 올해(추경예산 기준)보다 1.4%(4,536억원) 감소한 33조1,922 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법인세 신고액이 전년보다 줄어드는 것은 지난

2009~2010년 이후 처음이다. 정부가 거두는 법인세는 크게 신고분과 원천징수분으로 나뉜다. 이 중 법인세 신고분은 배당·이자 등 금융소득을 제외하고 기업이 순수하게 영업활동 등으로 벌어들인 수입 등에 부과돼 산업계의 경영여건을 가늠하게 하는 바로미터로 꼽힌다. 그나마 기재부는 내년도 기업들의 이자·배당수입 등이 호전돼 법인세 원천징수분이 올해보다 4.1%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원천징수분 증가분을 더해도 워낙 신고분 감소분이 커 법인세 총수입은 고작 560억원 늘며 거의 제자리걸음(0.1% 증가)을 하게 된다.

2009년과 2010년의 경우 법인세 신고액이 각각 전년 대비 3.7%(1조1,672억원)와 7.8%(2조3,969억원) 줄었는데 이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세계 경기가 얼어붙어 국내 기업의 영업실적이 타격을 받은 탓이었다. 이번에는 경기부진 외에 다양한 함수들이 얽여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삼성을 제외한 대부분 기업의 경영여건이 좋지 않음에도 경제민주화 등으로 기업 심리를 더욱 열어붙게 한 것이 사실”이라며 “그 결과가 세입감소로 나타난 데 대해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기업들의 어려운 상황에 대한 진단은 4~5년 전과 비슷한데도 정책적 처방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과거 이명박 정부는 금융위기 이후에도 기업 감세정책을 추진해 투자와 영업을 독려했고 그 결과 세율은 낮아졌지만 오히려 2011년 법인세 신고액 징수 실적은 전년 대비 무려 22%가량(6조1,653억원) 반등하는 성과를 거뒀다. 반면 현정부 들어서는 조세당국이 기업들의 세무조사 강도를 높이는가 하면 국회에서는 야권이 대기업 등에 대한 증세를 주장하며 법인세율 인상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기업들의 법인세 신고액이 내년에 4년만에 줄어들 것이라는 기획재정부의 추산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다.

위 기사는 내년에 기업의 법인세 중 원천징수분인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은 올해보다 늘어나지만 법인세 중 신고분으로서 기업이 순수하게 영업활동 등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은 4년만에 줄어들 것이라는 기획재정부측의 전망을 전했다.

그 원인에 대해 위 기사는 “경기 부진 외에 다양한 함수들이 엮여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고 풀이하고 이어 ‘재계의 한 관계자’의 말을 인용했다. 즉, “삼성을 제외한 대부분 기업의 경영여건이 좋지 않음에도 경제 민주화 등으로 사업심리를 더욱 열어붙게 한 것이 사실” “그 결과가 세입감소로 나타난데 대해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등이다.

위 기사는 법인세 신고액 감소 전망의 원인에 대해서는 ‘경기 부진과 다양한 함수’라고 여러 가지를 지적하면서도 막상 이어지는 원인 내용 설명에서는 ‘다양한 함수’ 중 한 가지인 ‘경제 민주화 등으로 사업 심리를 더욱 열어붙게 한 것’이라는 내용만 상세하게 서술했다. 위 기사는 본문의 이 대목을 하나의 개념으로 몽뚱그려 「기업 쥐어짜더니 나라 곳간만 축났다」는 표현으로 제목을 뽑았다.

그러나 서울경제가 ‘기업을 쥐어짜다’고 표현한 정부의 정책실행이 과연 다른 효과는 없이 오로지 나라 곳간만 축내게 했는지 그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기사 본문에서 아무런 설명이 없다.

이는 편집기자가 제목을 달면서 기사 본문에 나타난 사실에 임의로 자신의 의견을 덧씌워 기사 내용을 왜곡·과장함으로써 보도의 기본 원칙인 정확성과 객관성, 공정성을 위반한 것이다. 또 『신문의 표제는 기사의 요약적 내용이나 핵심적 내용을 대표해야하며 기사 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해서는 안된다』는 신문윤리실천요강을 어긴 것으로 신문의 책임과 권위, 독자의 알 권리를 크게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2조 「언론의 책임」, 제4조 「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4-1007 신문윤리강령 위반
한국경제 발행인 김 기 응

〈주 문〉

한국경제 2014년 1월 6일자 A3면 「1년새〈2012년 12월 1일 법 시행〉 3057개 ‘붓물’ … ‘정치性 협동조합’ 난립에 깜짝 놀란 典」 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한국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협동조합기본법(협동조합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 간 신경전이 불붙었다. 새누리당은 설립 제한을 거의 없앤 전국 협동조합이 야당의 선거 네트워크로 악용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며 법 개정엔 들어갔다.

이에 민주당은 “경제적 약자를 위한 협동조합을 선거와 연결짓는 것 자체가 무리”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시행 1년을 맞은 협동조합법이 양당의 지방선거 전략과 맞물려 첨예한 정치 이슈로 불거지는 양상이다.

◆ 3월까지 협동조합 보완책 마련

새누리당은 최근 유승민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사회적경제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협동조합의 제도적 보완책 마련에 나섰다. 특위는 전문가 논의를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3월까지 관련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표면적으로는 협동조합의 성공모델 개발과 제도 정착을 위한 당내 의견 수렴을 표방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지역 협동조합 확산에 따른 위기감이 작용하고 있다는 게 당 안팎의 분석이다.

조합의 업무분야에 거의 제한을 두지 않는 협동조합법이 2012년 12월 1일 시행된 이후 1년여 동안 전국에선 3057개의 협동조합이 신설됐다. 여당은 물론 정부도 예상하지 못했던 가파른 증가세로, 새누리당은 협동조합이 자칫 선거를 위한 정치 도구로 활용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협동조합법 10조2항은 ‘국가와 공공단체는 협동조합의 활동에 대해 적극 협조해야 하고, 사업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6·4 지방선거 승패의 분수령이 될 수도권에서 현역 야당 소속 단체장들이 협동조합 지원을 약속하며 표몰이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게 새누리당의 판단이다. 새누리당 핵심 당직자는 “협동조합법은 2011년 손학규 당시 민주당 대표가 대표 발의한 법안이 기초가 된 것”이라며 “당초 의도가 어땠든 현재 법 시행의 부작용 우려가 제기된 만큼 보완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 박원순 견제 나서나

여당이 협동조합법 손질에 나선 것은 협동조합 확산을 시정 목표로 세운 민주당 소속의 박원순 서울시장을 직접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박 시장은 작년 2월 “2019년까지 협동조합을 8000개까지 확대하고, 협동조합 경제 규모를 지역내총생산(GRDP)의 5%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500억원 규모의 사회투자기금 안에 협동조합기금을 만들어 창업자금이나 운영비가 필요한 곳에 장기 저리로 지원하고, 협동조합의 공공조달시장 참여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 마을기업 예산을 활용해 공공성 강한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협동조합에 최대 2년간 사업비 8000만원과 기업당 최대 1억원의 임대보증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작년 10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지자체의 지원책을 고리로 생성된 인위적인 협동조합은 다시 상위 협동조합을 결성하는 방식으로 수평·수직적으로 무한대 팽창이 가능하다”며 “협동조합이 다른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민주, “선거 색안경이 문제”

정희수 새누리당 의원이 작년 9월 발의한 협동조합의 포괄적인 정치 관여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김용태 의원은 이르면 이달 중 지자체가 관급공사를 발주하면서 특정 협동조합과 수의계약이나 인센티브 계약을 맺는 것을 금지하는 등 지원조건을 강화한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반대로 협동조합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어서 법안 처리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김현미 의원은 협동조합의 조세 감면 규정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해놓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협동조합은 경제민주주의와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며 “새누리당이 선거 논리에 매몰돼 근시안적인 시각으로 협동조합법에 접근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 협동조합기본법

5인 이상 조합원을 모으면 누구나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야 합의로 2012년 12월1일부터 시행됐다. 3억원 이상이던 출자금 제한을 없애고, 200명 이상이던 설립 동의자를 5명으로 줄이는 등 설립 요건을 대폭 완화한 게 핵심이다.』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4010513851>)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한국경제의 위 기사는 새누리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협동조합이 야당의 선거 네트워크로 악용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며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기사에 따르면 협동조합법이 2012년 12월1일 시행된 이후 1년여 동안 전국에선 3,057개의 협동조합이 신설됐다. 서울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885개에 이른다. 새누리당은 협동조합이 자칫 선거를 위한 정치 도구로 활용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때문에 포괄적인 정치 관여 행위 금지, 지자체가 관급공사를 발주하면서 특정 협동조합과 수의계약이나 인센티브 계약을 맺는 것을 금지하는 것 등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편집자는 이 기사를 먼 머리기사로 다루면서 「1년새 3057개 ‘붓물’ … ‘정치성 협동조합’ 난립에 깜짝 놀란 輿」라는 통단 제목을 달았다. 마치 법 제정 이후 설립된 3,057개의 협동조합들이 모두 ‘정치성 협동조합’이라는 인상을 주고 있다. 이는 기사 본문과 거리가 먼 내용이다. 기사 본문 중에는 3천여개의 협동

조합 설립을 ‘난립’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나, 이들 조합들이 ‘정치성 조합’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없다. 『새누리당은 협동조합이 자칫 선거를 위한 정치 도구로 활용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을 뿐이다.

이 같은 제목은 기사 본문의 내용을 과장 또는 왜곡한 것으로 신문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나아가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4-1031 신문윤리강령 위반 내일신문 발행인 장 명 국

〈주문〉

내일신문 2014년 1월 22일자 1면 「신용정보유출 대란, 금융사 불법조회도 한몫」 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내일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고객정보를 불법무단조회한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관련기사 11.12면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2년 3월까지 경영자문료 횡령 혐의와 관련한 자금추적 과정에서 신한금융 사외이사를 지낸 양용웅 제일한국인본국투자협회장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등 고객 동의 없이 195명의 개인신용정보를 329차례나 들여다봤다.

또 신한은행 직원 50명은 개인적인 목적으로 가족이나 친척 및 직장동료 92명의 개인신용정보를 1292회 조회했으며 고객의 금융거래정보를 예금주 동의

없이 타인에게 넘겨줬다. 금감원은 신한은행을 기관주의 처분하고 8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임직원 65명은 정직과 감봉, 견책에 처해졌다.

국민은행 역시 직원 57명이 지난 2011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개인적인 목적으로 가족 등의 개인신용정보를 239회나 부당 조회했다. 신용정보법을 위반했지만 금감원의 제재는 견책과 주의 등의 경징계에 그쳤다.

우리은행 직원 12명도 지난 2009년 10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친인척 등의 개인신용정보를 230회 부당 조회했고 농협은행 하양지점은 지난해 6월 개인정보가 포함된 3.6톤의 중요 문서를 폐기하는 과정에서 별도 계약 없이 제3자에게 임의로 제공해 처리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는데도 금감원은 농협은행 하양지점을 안전행정부에 통보하고 임직원 2명을 경징제한 것에 그쳤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은 목적 외 이용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처벌은 행정제재에 머물러 있다.

금융사와 금감원은 개인정보를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이나 정보주체가 동의한 범위를 벗어나 이용한 임직원이 있으면 형사고발을 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개인정보를 무단조회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금융사 임직원은 전무한 실정이다.

금융당국과 금융권 전반에 불법행위에 대한 불감증이 만연해 있는 것이다. 법조계 인사는 “형사처벌 여부는 사법당국이 판단할 문제이지만 일단 불법 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고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94672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내일신문의 위 기사는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면서 고객정보를 무단 조회했다가 금융감독원에 적발돼 행정제재를 받은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는 내용이다.

기사에서 언급한 금융회사 임직원들의 고객정보 불법무단조회 사례는 지난 2009년 10월부터 2012년 3월 사이에 벌어진 일이다. 최근 문제가 된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사건과 시기적으로는 물론 사건 내용면에서도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기사 본문에도 이에 관한 설명이 없다. 다만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고객정보를 불법무단조회한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는 기사 첫 문장을 볼 때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사건을 계기로 금융회사 임직원들의 고객정보 불법무단조회 사례를 취재해 기사화한 것이다.

그런데도 편집자는 기사의 큰 제목을 「신용정보유출 대란, 금융사 불법조회도 한몫」으로 달아 마치 금융사 임직원들의 고객정보 불법조회가 카드사 신용정보유출 사건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것처럼 보이게 했다.

이러한 제목 달기는 편집자가 기사 본문에 나타난 사실에 임의로 자신의 의견을 덧붙여 기사 내용을 왜곡·과장한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러한 보도 태도는 신문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4-1032 신문윤리강령 위반

내일신문 발행인 장 명 국

〈주문〉

내일신문 2014년 2월 7일자 1면 「곳곳에 ‘제2 용산참사’ 시한폭탄」 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내일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서울지역 뉴타운·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장 대부분이 조합측과 주민간 명도소송에 휩싸여 강제철거가 예상되는 3월쯤 물리적 충돌이 우려된다. ‘제2 용산참사’를 막기 위해선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1월 말 현재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뉴타운·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장 가운데 이주하지 않은 가구는 1255가구에 달한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뉴타운·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장 16곳 가운데 11곳에서 명도소송 232건이 진행 중이다. 뉴타운 지역인 영등포1-4구역이 71건으로 가장 많고, 재개발 지역인 당산4구역이 62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종로구 뉴타운 지역인 돈의문1구역도 51건이나 된다. 마포구 아현1-3재개발 구역은 28건이다.

그동안 조합측과 주민들의 갈등이 폭발하지 않은 것은 서울시가 겨울철(12~2월) 철거금지 조치를 내렸고, 사전협의체를 운영해 갈등을 분산시켰기 때문이다. 하지만 3월이 되면 명도소송이 끝난 구역을 중심으로 강제철거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난 구역 가운데 이미 90% 이상 이주한 곳들이 대부분이어서 조합은 비용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강제철거를 강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입자들도 전국철거민연합회와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등 철거민조직과 연대해 강제철거에 강하게 맞설 준비를 하고 있다. 이들이 정면충돌할 경우 ‘제2 용산참사’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돈의문1구역 한 상가 세입자는 “삶의 터전인 이곳에서 내쫓으면 다른 곳へ 가서 자리잡을 수가 없다”며 “계속 영업을 할 수 있게 해주든지, 충분한 보상을 해주기 전까지는 이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돈의문1구역 신문로2가 상가세입자비상대책위원회는 7일 오후 전국철거민연합회 관계자들과 대책회의를 갖기로 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명도소송이 끝난 곳이 있어서 3월 철거가 시작될 것으로 본다”면서 “보상이 현실화되지 않으면 전철연과 연합해 끝까지 투쟁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명도소송이 끝난 뒤 조합이 강제철거에 들어가면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면서도

“조합과 세입자간 협의자리를 마련해 강제철거가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96111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내일신문의 위 기사는 서울 지역 뉴타운·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장 대부분에서 조합과 주민 간 명도소송이 진행중이며, 강제철거가 예상되는 3월쯤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는만큼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내용이다.

기사에 따르면 1월말 현재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뉴타운·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장에서 이주하지 않은 가구가 1255가구이며, 정비사업장 16곳 중 11곳에서 232건의 명도소송이 진행 중이다. 서울시의 겨울철(12~2월) 철거금지 조치와 사전협의체 운영으로 그동안 조합과 주민 간 충돌이 없었지만 3월이 되면 명도소송이 끝난 구역을 중심으로 강제철거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기사는 전하고 있다. 그러면서 조합과 세입자들이 『정면충돌할 경우 ‘제2 용산참사’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용산참사는 지난 2009년 1월 19일 서울시 용산 재개발구역 보상대책에 반발해 점거농성을 벌여온 철거민들을 경찰이 해산하는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해 6명이 사망하고 24명이 부상당한 비극적 사건이다.

위 기사의 취지는 이 같은 비극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사는 강제철거에 따른 물리적 충돌을 우려하면서도 『명도소송이 끝난 구역을 중심으로 강제철거가 진행될 가능성』과 『정면충돌할 경우 ‘제2 용산참사’가 발생할 가능성』 등 여러 가지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편집자는 기사 제목을 「곳곳에 ‘제2 용산참사’ 시한폭탄」이라며 단정적으로 달았다. 서울 시내 뉴타운·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장 여러 곳에서 용산참사와 같은 비극적 사건이 조만간 일어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시한폭탄이라는 표현은 본문에는 없다.

따라서 위 기사의 제목은 편집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과장·왜곡됐다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보도 기사의 객관성과 신뢰를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4-1070 신문윤리강령 위반
헤럴드경제 발행인 이 영 만

〈주문〉

헤럴드경제 2014년 2월 26일자 4면 「법사위 ‘7인의 野人’/국회를 멈춰세우다」 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헤럴드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특검추천위’ 설치를 놓고 여야가 벼랑끝 대치를 이어가면서 2월 임시국회가 ‘맹탕’으로 끝날 공산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또다시 법사위 ‘보이콧’을 선언했다. 특검제 외에도 여야는 특별감찰관제, 기초연금법, 국정원 개혁 등에 대해서도 접점 없는 평행선만 그리고 있다. 다만 여야 모두 ‘일 안하는 국회’에 대한 비난 부담이 큰 만큼,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적극 처리 가능성은 남아 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26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오늘 법사위 회의가 열릴 가능성은 없다. 특검추천위를 법무부에 둔다는 것이 말이되느냐”고 말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전날 특검 수사 대상 범위를 비리로 제한하고, 특검추천위를 법무부에 두도록 한 새누리당의 주장에 반발하며 ‘법안심사 보이콧’을 선언했다.

국회에 제출된 모든 법안의 창구 역할을 담당하는 법사위가 26일 열리지 않

을 경우 27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는 처리할 법안이 없어 파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민주당이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 여론 부담에도 불구하고 법사위 보이콧을 선언한 것은 새누리당의 방안대로 특검이 도입될 경우 특검의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검추천위를 정부 산하에 설치할 경우 정치적 중립성의 훼손 우려가 높고, 이미 한 차례 ‘기구특검’에서 ‘제도특검’으로 특검의 형식적 수위를 양보했다는 점도 민주당이 물러서기 어렵다고 판단한 배경이다.

새누리당은 이미 김도읍 의원 안으로 제출돼 있던 방안인데 민주당이 임시 국회 막바지에 와서 ‘어거지’를 쓴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의원은 “본인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해서 보이콧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며 “검찰 개혁법을 볼모로 민생법안에 브레이크를 건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법안들은 모두 700여건에 이른다. 이들 가운데엔 민생법안들도 적지 않다. 당장 예산 부족으로 영유아보육 지원이 끊길 위기를 막기 위한 영유아보육지원법은 지난해 2월부터 1년 가까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치솟는 전세 가격을 잡기 위해 민주당이 내놓은 주택임대보호법도 처리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과건근로자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과건근로자보호법 및 소비자집단소송법 등도 여전히 2월 국회 처리 대기 목록에 올라 있다.

그러나 여야가 2월 국회를 ‘포기’하기엔 치러야 할 부담이 적지 않다. 여야 대표가 올해 초 신년 회견에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공히 언급했고,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야당이 처리를 요구하는 법안들도 적지 않다.

따라서 여야 원내대표가 26일 저녁께 만나 임시국회 일정을 연장하면서 막판에 극적으로 타협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4월 임시국회의 경우 여야 모두 본격적인 지방선거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도 극적 타협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40226000467&md=20140301005353>〉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헤럴드경제의 위 기사는 ‘특검추천위’ 설치문제로 여야가 첨예하기 맞서는 바람에 2월 임시국회가 ‘맹탕’으로 끝날 공산이 커지고 있다는 내용이다. 특히 민주당이 법사위 ‘보이콧’을 선언해 법안 처리에 파행이 불가피해졌다는 것이다.

기사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특검후보를 추천할 ‘특검추천위’를 정부 산하(법무부)에 설치하는 안을 냈다. 이에 민주당은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높다고 반발하다 법사위 보이콧을 선언했다.

기사는 이 때문에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700여건의 법안 심사가 이뤄지지 않아 2월 임시국회가 ‘맹탕’으로 끝날 수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그러나 여야 모두 이러한 상황을 빚은데 대한 부담을 안고 있어 극적 타협의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편집자는 이러한 기사 내용 가운데 민주당의 보이콧에만 주목해 「법사위 ‘7인의 野人’/국회를 멈춰세우다」라고 자극적인 제목을 뽑았다. 법사위 ‘7인의 野人’은 기사 본문에는 없는 표현으로, 민주당 소속 7명의 법사위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제목은 민주당 소속 7명의 법사위원들이 2월 임시국회 활동을 멈추게 했다는 것으로 국회 파행의 모든 책임이 민주당 법사위원 7명에게 있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이러한 제목은 기사 내용을 과장한 것이며, 객관적 근거 없이 편견과 선입견을 앞세운 제목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 같은 제목 달기는 신문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나아가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4-1071 신문윤리강령 위반
서울경제 발행인 김 인 영

〈주문〉

서울경제 2014년 3월 13일자 10면 「•정태영 현대카드 사장/그의 혁신 손길에 한국 금융 성패 달렸다」 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서울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갑자기 잡스가 그리워짐. 읽다 만 전기를 영화 개봉 전에 끝내야겠다.”

지난해 애플의 아이콘이었던 스티브 잡스가 작고했을 때 그 누구보다 아쉬움과 공허함을 토로했던 이가 정태영 현대카드 사장이다. 정 사장은 잡스가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트위터를 통해 허탈한 속마음을 SNS로 고스란히 나타냈다. 정 사장의 ‘잡스앓이’는 단순히 한 인간에 대한 그리움에서 멈추지 않는다. 정 사장은 틈이 날 때마다 잡스의 위대함을 칭송해왔다. 그리고 그가 진정으로 추종한 것은 잡스가 추구해왔던 혁신이었다. 실제로 정 사장은 금융권에서 누구보다 혁신에 앞장서온 최고경영자(CEO)로 평가된다.

지난 11일 현대카드가 휴대폰 단말기 제조업체인 팬택과 손잡고 스마트폰을 출시하기로 하면서 현대카드의 혁신을 넘어선 ‘파격’이 금융사는 물론 제조업에까지 회자되고 있다. 내년 상반기 출시를 목표로 추진되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현대카드는 디자인 부문을 맡는다.

이번 일은 경영난을 겪고 있는 팬택이 올 1월 현대카드의 문을 두드리면서 시작됐다. 보고를 받은 정 사장은 고민에 빠졌다. 카드사가 스마트폰 개발에 참여하는 것이 맞는지 스스로에게 물었다. 카드업계 불황이 깊어지면서 실적은 하락일로에 빠져 있던 터였다. 정 사장은 숙고 끝에 수락했다. 돈(이익)은 부차적인 문제였다. 모바일 시장을 이해하는 좋은 기회라 판단했다.

초기 단계인 지금 두 기업 간 기술융합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예단하기 어

렵다. 그러나 결과를 차치하고서 두 기업의 만남만으로도 우리나라 산업계에 전해지는 울림이 크다. 전 세계적인 시대 조류로 떠오른 ‘융합’의 대표 사례로 기억되기 때문이다.

사실 정 사장은 융합에 누구보다 관심이 많은 최고경영자(CEO)다. 정 사장이 융합과 혁신, 디자인의 전도사로 사전에 길이 남을 스티브 잡스의 추종자인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중략)

정 사장의 혁신은 이제 미국과 런던 등 글로벌 무대를 향하고 있다. 생산과 유통, 금융 3자가 결합된 형태,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 금융산업의 글로벌화의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혁신을 향한 끊임없는 그의 손길과 그 성패가 대한민국 금융산업의 업그레이드를 가능할 것”(금융당국 고위 관계자)이라는 말이 결코 허언이 아닌 셈이다.』

(<http://economy.hankooki.com/lpage/finance/201403/e20140312180433117490.htm>)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서울경제는 금융계 핫이슈를 다루는 기획인 ‘파이낸셜 포커스’를 통해 정태영 현대카드 사장을 집중 조명했다. 최근 현대카드가 휴대폰 단말기 제조업체인 팬택과 손잡고 스마트폰을 출시키로 하면서 정 사장의 혁신이 금융계를 넘어 회자되고 있다는 내용이다. 기사는 정사장이 현대카드에서 추진한 ‘스페셜 트랙(역량 과 성취 등을 검증해 채용하는 제도)’ 등을 대표적인 혁신사례로 소개하면서 그의 경영성과를 긍정 평가했다.

편집자는 이에 인용부호도 없이 「정태영 현대카드 사장/그의 혁신 손길에 한국 금융 성패 달렸다」고 큰 제목을 뽑았다. 기사 말미에 보도된 『“혁신을 향한 끊임없는 그의 손길과 그 성패가 대한민국 금융산업의 업그레이드를 가능할 것”(금융당국 고위 관계자)』이라는 내용에 바탕을 둔 제목이다.

그러나 제목의 표현은 고위관계자의 발언내용과도 다르며, 객관적 근거가 부족한 내용이다. 제2금융권인 한 신용카드사 대표의 혁신이 한국 금융산업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혁신을 향한 끊임없는 그의 손길과 그 성과가 대한민국 금융산업의 업그레이드를 가늠할 것”』이라는 익명의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의 발언 내용조차 누구나 수용할 수 있는 주장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제목은 익명의 취재원의 근거없는 주장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이를 지나치게 과장, 마치 객관적인 사실인 것처럼 왜곡한 제목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더 나아가 취재원인 정 사장을 필요 이상으로 치켜 올리려고 무리하게 단 제목이라는 의혹을 살 수가 있다.

이 같은 제목 달기는 신문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나아가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⑤(보도자료의 검증),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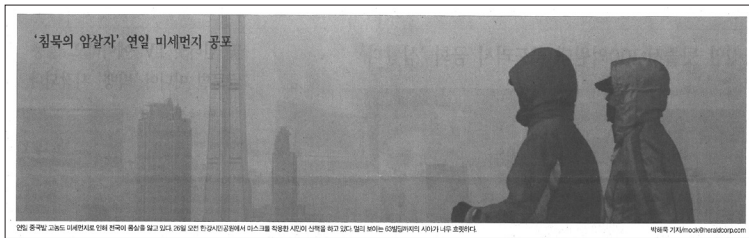
**▲ 2014-1091 신문윤리강령 위반
헤럴드경제 발행인 이 영 만**

〈주문〉

헤럴드경제 2014년 2월 26일자 10면 「‘침묵의 암살자’ 연일 미세먼지 공포」 사진 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헤럴드경제는 아래 적시 사진을 게재하면서 다음과 같이 사진설명을 달았다.



연일 중국발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해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다. 26일 오전 한강시민공원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이 산책을 하고 있다. 멀리 보이는 63빌딩까지의 시야가 너무 흐릿하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40226000421&md=20140301005406>)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헤럴드경제는 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올라가 대기가 오염된 서울시내의 모습을 사진 기사로 보도하면서 제목을 「‘침묵의 암살자’ 연일 미세먼지 공포」라고 붙였다.

올들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이 크게 늘어났고 건강에 해로울 것이라는 보도는 여럿 있었지만 미세먼지 때문에 사람이 목숨을 잃는 경우는 알려진 바 없고 이에 관한 보도도 없었다. 그런데도 헤럴드경제는 ‘침묵의 암살자’와 ‘공포’라는 자극적인 표현을 넣어 제목을 달았다. 제목이 주는 느낌대로라면 독자들로 하여금 미세먼지가 자칫 목숨을 잃을 수도 있을 정도로 건강에 치명적이라고 오해하고, 불안감을 갖게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제목은 객관적 근거 없이 편집자의 편견이나 선입견에 맞춰 작성됐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 같은 제목 달기는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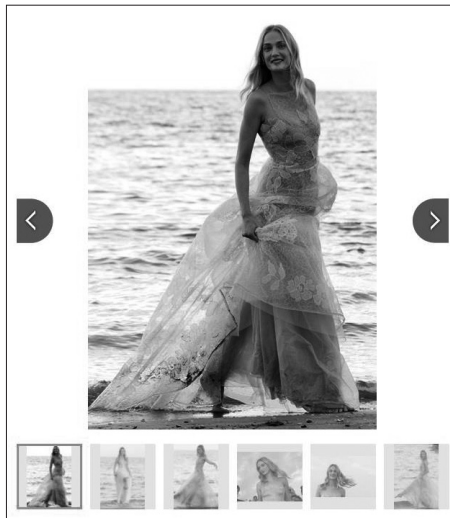
▲ 2013-3010 신문윤리강령 위반
조인스닷컴 발행인 박 상 순

〈주문〉

조인스닷컴 2013년 8월 30일자 「하반신까지 훤히 ‘시스루 여신’」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조인스닷컴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사진] 베니스 여신의 훤히 시스루 자태 ‘보일듯 말듯’

[온라인 중앙일보]입력 2013.08.30 00:02 / 수정 2013.08.30 14:00

제70회 베니스영화제 개막식과 폐막식 사회자로 모델 겸 배우 에바 리코보노가 선정됐다.

리코보노는 27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베니스의 한 해변에서 열린 포토콜 행사에서 가슴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하얀색 드레스를 입고 다양한 포즈를 취했다.

한편, 세계 3대 영화제 가운데 하나인 베니스영화제는 28일부터 다음달 7일 까지 열린다. 올해에는 경쟁부문 초청작 20편을 포함해 세계 각국의 영화 백여 편이 상영된다. 한국 영화로는 김기덕 감독의 신작 '뫼비우스'가 비경쟁 부문에 초청됐다. [AP=뉴시스,로이터=뉴스1]

<http://pic.joins.com/photo/article/article.asp?total_id=12473890>



<8. 30. 15:03 캡처>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조인스닷컴은 배우 리코보노가 베니스영화제 폐막식 사회자로 선정됐다 소식을 전하면서 자사 메인페이지를 소개하는 포털사이트 네이버 <뉴스스탠드> 난에 「하반신까지 훤히 '시스루 여신」이라는 제목을 게재하고 이를 열어 보면 이 배우가 해변에서 드레스 차림으로 포즈를 취한 여러장의 사진을 담은 포토 기사를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런데 게재된 이 여배우의 사진은 상반신의 속살이 다소 비칠 뿐 하반신까지 훤히 비치는 '시스루 패션'과는 거리가 멀다. 하반신이 비치는 여배우의 사진을 게재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이용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제목과 동떨어진 내용의 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올바른 보도행위가 아니다.

기사 내용을 과장하여 제목을 다는 것은 정확성, 객관성이 결여된 보도일

뿐만 아니라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 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3015 신문윤리강령 위반
조인스닷컴 발행인 박 상 순

〈주 문〉

조인스닷컴 2013년 9월 2일자 「가슴 드러낸 풍만女, 다리 벌린 女, 대체 뭐하는 곳?」 제목 등의 편집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 유〉

1. 조인스닷컴은 포털사이트 네이버 <뉴스스탠드> 자사 메인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제목을 게재하고 이를 열어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도록 하였다.



〈9. 2. 16:39 캡처〉

1)가슴 드러낸 풍만女, 다리 벌린 女, 대체 뭐하는 곳?

[사진] 일탈·자유·퇴폐... 버닝맨, ‘여기가 지상낙원?’

[온라인 중앙일보]입력 2013.09.02 00:01 / 수정 2013.09.02 09:12



<http://pic.joins.com/photo/article/article.asp?total_id=12492040>

2)브라 홀렁 女학생 중요 부위에

[사진] 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 반대 시위

[온라인 중앙일보]입력 2013.09.02 00:10 / 수정 2013.09.02 09:23



<<http://pic.joins.com/photo/article/article.asp?totalLid=12492080>>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조인스닷컴은 1)미국 네바다 사막에서 열린 한 축제에서 참가자들의 자유분방한 모습을 담은 사진을 게재하면서 「가슴 드러낸 풍만女, 다리 벌린 女…」라고 제목을 자극적으로 달았고, 2)유두를 테이프로 가린 채 토폰리스 차림으로 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FTA) 반대시위에 참가한 여대생의 사진에 「브라 홀렁 女학생 중요 부위에」라고 제목을 붙여 시위의 목적성을 폄하하고 여성을 성적으로 희화화 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주위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다리를 벌리고 있는 여성의 사진이나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의도적인 노출을 한 여성의 사진을 게재하면서 요약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성적 상상력을 자극하는 듯한 제목을 다는 것은 대중의 건전한 정서를 해치고 신문의 품위를 손상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 ②(편집변경 및 선정주의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3024 신문윤리강령 위반 스포츠서울닷컴 발행인 김 상 규

<주문>

스포츠서울닷컴 2013년 10월 14일자(캡처시각) 「클라라 지드레곤 포착, 클럽서 은밀하게 …」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스포츠서울닷컴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2013. 10. 14 10:54(캡처시각)〉

입력: 2013.10.14 10:03 / 수정: 2013.10.14 10:03

클라라 지드레곤 사진 본 누리꾼 “믿을 수 없어”

[스포츠서울닷컴 | e뉴스팀] ‘클라라 지드레곤, 진짜 사진 맞아?’



최근 클라라와 지드레곤이 한 클럽에서 춤을 즐겼다는 소식에 누리꾼들이 의심을 보이고 있다.

최근 SNS에는 클라라와 지드레곤으로 추정되는 남자가 즐겁게 춤을 추고 있는 사진이 공개됐다. 해당 사진 속 연보라색 원피스를 입은 여성은 검은 반팔 티셔츠를 입고 있는 남성과 몸을 맞대고 있다. 게시자에 따르면 이 사진은 11일 오전 한 클럽에서 진행된 박재범 힙합 레이블 ‘AOMG’ 론칭 파티에 참

석한 클라라와 지드래곤의 모습이다. 하지만 사진이 워낙 흐릿하고 두 사람의 얼굴을 알아보기 힘들어 누리꾼들은 이 사진의 진위 여부를 놓고 의심을 보이고 있다.

클라라 지드래곤의 파티 사진에 누리꾼들은 “클라라 지드래곤이 이렇게 공개된 장소에서 함께 춤을 댄다는 게 뭔가 의심스럽다”, “클라라 지드래곤이 맞는지 확인하려면 사진이 더 뚜렷해야 되는 거 아닌가?”, “클라라 지드래곤, 맞는 거 같긴 한데 잘 모르겠네요”, “클라라와 지드래곤이라고 믿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 거 아니야?” 등 다양한 반응을 나타냈다. sseoul@media.sportsseoul.com』

〈<http://news.sportsseoul.com/read/entertain/1252447.htm?from=naver>〉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스포츠서울닷컴은 최근 클라라와 지드래곤이 한 클럽에서 춤을 댄다는 정체 불명의 사진이 SNS에 올려졌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해당 사진을 게재하였다. 기사의 대부분은 ‘진위여부를 알 수 없다’ ‘추정된다’ ‘네티즌은 의심을 품고 있다’는 등 확인되지 않은 사실임을 강조하고 원제목도 「클라라 지드래곤 사진 본 누리꾼 “믿을 수 없어”」라고 달았다.

그러나 네이버 뉴스스탠드 자사 메인화면에는 캡처한 바와 같이 「클라라 지드래곤 포착, 클럽서 은밀하게…」라는 제목 하에 선정적인 사진을 함께 게재해 마치 서로 몸을 부비고 춤을 춘 것처럼 기정사실화 하였다. 대부분의 매체들도 이내용을 다뤘지만 진위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했을 뿐 단정적인 제목을 달지 않았다.

클라라의 소속사도 “클라라가 해당 클럽에서 지드래곤을 만났다”는 사실만 밝혀 두 사람이 실제로 춤을 함께 댄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공개된 사진 역시 화질이 워낙 나빠 진위여부에 대한 논란도 여전히 상존한다.

특히 미혼의 인기연예인 교제에 관한 보도는 자칫 인기추락이라는 치명적

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에도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도한 것은 신문윤리강령 제4조 「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3033 신문윤리강령 위반 매경닷컴 발행인 윤 형 식

〈주문〉

매경닷컴 2013년 11월 1일자(캡처시각) 「20대 직장女 남자선배 몰래와 귓속말로 `혁` 속말로 `혁`」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매경닷컴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11.1 16:12 캡처시각〉

『[직장인 직장인] 밥에 금 넣었나 ... 직장인 피 말리는 점심값

기사입력 2013.11.01 11:11:40 | 최종수정 2013.11.04 17:30:00

점심값이 ‘금값’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대 낮은 수준에 머무른다지만 왜인지 점심값만큼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체감물가는 오히려 오르는 것 같

아 직장인들은 점심시간마다 메뉴 고민을 멈출 수가 없다.

(중간 생략)

◆ 도시락을 싸오자니 냄새가...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점심메뉴인 만두전골과 김치찌개

지난 6월 취업한 김경미(가명)씨는 넉넉지 않은 월급을 아껴보라며 도시락을 준비해 출근하기로 했다.

그런데 하루는 옆자리 선배가 “어디서 김치 냄새가 난다”며 코를 찡그렸다. 깜짝 놀라 가방을 열어봤더니 도시락이 엮어져 경미씨 가방을 엉망으로 만들어놨던 것.

경미씨는 “첫월급을 받았다고 큰 마음먹고 산 가방인데 아낀 점심값보다 세탁비가 더 나왔다”며 우는 소리를 했다.

게다가 회사엔 마땅히 도시락을 먹을 공간이 없어 난처한 적도 종종 있다. 탕비실은 점심을 같이 먹는 동기 2명과 함께 들어가기에 비좁았고 사무실에서 먹자니 음식 냄새가 남아 다른 동료들에게 민폐였다.

경미씨는 “사무실에서 며칠 도시락을 먹었다가 지금은 포기했다”고 전했다. 점심시간 식사를 마치고 돌아온 상사가 냄새가 난다며 불쾌해했기 때문이다.

(이하 생략) [이○○ 기자]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3&no=1069164>>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직장인의 애환을 소개하는 기획물의 하나로, 점심값이 비싸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은 여직원이 도시락을 싸왔다가 냄새가 난다는 직장상사의 지적 때문에 이를 포기했다는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있다. 그런데 기사에는 가방에 넣어둔 도시락이 엮어져 옆자리 선배가 김치냄새가 난다고 코를 찡그렸다는 내용 뿐인데, 제목은 「20대 직장女, 남자선배 몰래와 컷속말로 ‘헉’」이라고 달았다.

기사의 내용과 동떨어진 제목으로 독자의 호기심을 유도하는 것은 신문윤리 실천요강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3034 신문윤리강령 위반

세계닷컴 발행인 조 한 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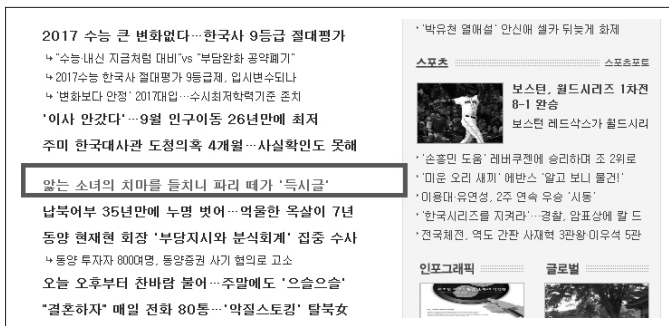
조인스닷컴 발행인 박 상 순

〈주문〉

세계닷컴 2013년 10월 24일자(이하 캡처시각) 「**않는 소녀의 치마를 들치니 파리떼가 ‘득시글’**」, 조인스닷컴 10월 24일자 「**소녀 다리 들추니 구더기가 살 파먹고 … 40년전 그곳엔**」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세계닷컴과 조인스닷컴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세계닷컴 2013. 10. 24 14:48 캡처시각〉

입력 2013-10-24 08:54:10, 수정 2013-10-24 13:45:03

일본인 목사가 기록한 청계천 빈민가의 참상〈연합〉

일본인 목사가 기억하는 청계천의 ‘그 시절’

노무라 리포트_310. 1974년 9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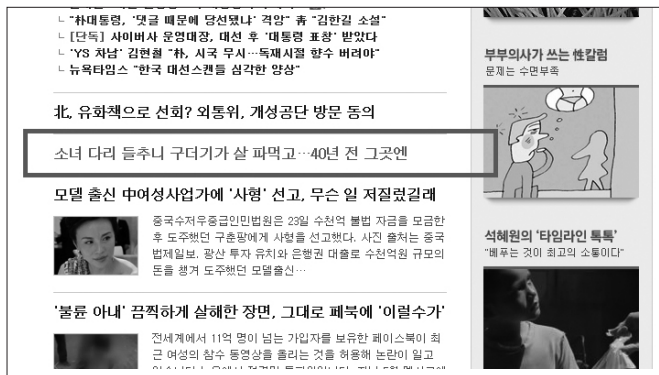
1974년 9월 청계천 빈민가의 한 쪽방을 찾아간 일본인 목사는 바로 누울 공간도 없어 대각선으로 누워 앓는 한 소녀를 만났다.

소녀의 치마를 들치니 옆구리 밑과 무릎 부근에 하얀 뼈가 드러나 있고 파리 떼가 까맣게 소녀의 뼈를 덮고 있었다.

목사는 파리 떼가 산 소녀의 다리에 알을 낳았고 구더기가 생기고 그 구더기가 살을 파먹어가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중간 생략)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3/10/24/20131024000336.html>



〈조인스닷컴 2013. 10.24 16:53 캡처시각〉

<http://joongang.joins.com/>

『일본인 목사가 기록한 청계천 빈민가의 참상』

[CBS노컷] 입력 2013.10.24 11:09

파리떼가 산 소녀의 다리에 알을 낳고 구더기까지 (사진=1974년 9월의 '노무라 리포트')

1974년 9월 청계천 빈민가의 한 쪽방을 찾아간 일본인 목사는 바로 누울 공간도 없어 대각선으로 누워 앓는 한 소녀를 만났다.

소녀의 치마를 들치니 옆구리 밑과 무릎 부근에 하얀 뼈가 드러나 있고 파리 떼가 까맣게 소녀의 뼈를 덮고 있었다.

목사는 파리떼가 산 소녀의 다리에 알을 낳아 구더기가 생겼고 그 구더기가 살을 파먹어가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중간 생략) 연합뉴스

<http://joongang.joins.com/article/007/12945007.html?ctg=1700&cloc=joonganglhome1newslst1>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1970년대 청계천 판자촌에서 빈민구호활동을 펴왔던 일본인 노무라 목사가 당시 빈민의 참상을 전하는 500여 장의 사진을 엮은 사진집 ‘노무라 리포트’가 최근 출간됐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기사는 또 “노무라 목사는 서문에서 ‘한국의 밑바닥 계층의 사람들을 촬영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진을 당연히 한국인들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으며, (중략)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일본이 한국에 범한 그 무서운 침략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죄합니다’라고 적었다”고 덧붙이고 “그가 서울시로부터 명예서울시민증을 받는다”고 전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절 빈민가에서 헌신적인 활동을 한 외국인이 당시 생활상을 기록으로 남긴 사진집을 펴냈다는 감동적인 얘기를 전하면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몸속에 구더기가 파들어갈 정도로 앓다 숨진 소녀의 사연만을 부각시켜 「앓는 소녀의 치마를 들치니 파리떼가 ‘득시글」 「소녀 다리 들추니 구더기가 살 파먹고 ... 40년전 그곳엔」 이라고 제목을 단 것은 당시 소녀의 죽음을 욕되게 하는 표현인 동시에 지나치게 자극적이고 선정적이라고 할 것이다.

신문의 표제는 기사의 요약적 내용이나 핵심적인 내용을 대표해야 하므로, 극히 일부분의 내용을 과도하게 포장해 독자의 호기심을 유도하는 것은 신문 윤리실천요강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4-3002 신문윤리강령 위반
한경닷컴 발행인 황 재 활

〈주 문〉

한경닷컴 2013년 12월 5일자(캡처시각) 「볼륨 女, 조깅하다가 남자 앞에서… ‘충격’」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 유〉

1. 한경닷컴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캡처시각 12.05 16:47〉

잘 찢어지는 경량 러닝화

입력 2013-12-04 21:33:24 수정 2013-12-05 02:34:32

지면정보 2013-12-05 A21면

소비생활妍, 18종 비교

휠라·푸마 등 쉽게 파손 ... 리복·르까프는 우수

한국소비생활연구원은 그물실 매듭 형태의 메시 소재를 사용한 9개 운동화 브랜드의 러닝화 18종을 대상으로 성능을 비교 평가한 결과 11개 품목이 쉽게 찢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발표했다. 종합적으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제품으로는 리복(제품명 서브라이트듀오·10만9000원), 르까프(알파런고·12만4000원), 나이키(에어맥스+2013·20만9000원)가 꼽혔다.

러닝화 18종의 갑피 파손 여부		
5만1200회 시험에도 갑피 파손되지 않음	5만1200회 시험시 갑피파손 발생	2만5600회 시험시 갑피파손 발생
리복 '서브라이트듀오'	프로스펙스 '알라이트워드2'	
뉴발란스 'M3090BG2'	프로스펙스 '알라이트핏5'	휠라 '버블런 3.0 플래쉬'
르까프 '알파런고'	르까프 '플렉스온2.0'	아식스 'GT2000'
휠라 '버블런3.0가드'	리복 '원쿠션'	푸마 '파스600s'
나이키 '루나글라이드+5'	아디다스 'CC 솔루션'	아식스 '젤카야노19'
푸마 '바이오엘리트글로우'	뉴발란스 'M884BB2'	
나이키 '에어맥스+2013'	아디다스 'CC 레블루션'	

자료: 한국소비생활연구원

조사 대상은 프로스펙스(한국), 르까프(한국), 리복(독일), 푸마(독일), 아디다스(독일), 나이키(미국), 뉴발란스(미국), 휠라(미국), 아식스(일본) 등 9개 브랜드의 메시 소재를 사용한 러닝화다.

한국신발과학연구원은 이들 제품의 △반복굴곡에 대한 내구성(신발을 여러 번 구부렸다 폈을 때 견디는 정도) △미끄럼 저항 △충격흡수 정도 △마찰에 대한 마모내구성 △착작 강도를 측정했다.

마찰포로 신발을 문지르자 아식스(제품명 GT2000·11만9000원, 젤카야노 19·14만5000원), 휠라(버블런3.0플래쉬·11만9000원), 푸마(파스600S·12만9000원) 등 4개 제품이 가장 먼저 파손됐다.

푸마코리아 측은 “러닝화 기능을 살린 다른 제품들도 많은데 바닥을 반짝이게 만든 패션 운동화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 결과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스마트컨슈머 사이트(www.smartconsumer.go.kr)의 비교공감 코너에서 볼 수 있다.

민○○ 기자 spop@hankyung.com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3120473941>>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한경닷컴은 한국소비생활연구원이 9개 운동화 브랜드의 러닝화 18종을 대상으로 성능을 비교 평가한 결과 11개 품목이 쉽게 찢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 발표한 기사를 게재하면서 네이버 뉴스스탠드 자사 초기화면에 「블룸 女, 조깅하다가 남자 앞에서 … ‘충격’」이라고 제목을 달았다.

그런데 기사에는 조사대상 브랜드와 성능측정 항목 및 측정결과 내용만이 있을 뿐 제목을 뒷받침할 만한 내용은 전혀 없다.

브랜드명까지 적시하며 「휠라·푸마 등 쉽게 파손 … 리복·르까프는 우수」라고 제목에 반영한 것은 소비자에게 어떤 제품이 우수한가를 알려주는 유익한 정보라고 볼 수 있지만, 운동팬츠 차림의 남녀 사진을 게재하고 블룸녀 운운하며 성적 상상력을 자극하는 제목을 다는 등 기사와 전혀 상관없는 내용으로 관심을 유도하는 것은 신문의 신뢰와 품위를 손상하는 동시에 특정 제품을 부각하기 위한 행위라는 오해를 살 우려가 있어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4-3004 신문윤리강령 위반
세계닷컴 발행인 조 한 규

〈주문〉

세계닷컴 2013년 12월 20일자(캡처시각) 「‘하룻밤 5000만원’ 성매매 女연예인 1명 있었다」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세계닷컴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12. 20 15:02 캡처시각>

입력 2013-12-19 17:24:54, 수정 2013-12-19 17:55:38

檢, 연예인 성매매 수사 결과 발표 “조혜련-이다해-윤은혜 등 혐의 없어”

검찰이 연예인 성매매 혐의 관련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수원지방법검찰청 안산지청은 19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등) 혐의로 성매매 브로커 A씨와 유명 여자 연예인 B씨 등 남자 3명(이 중 알선책은 1명)과 여자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유명 작곡가 사무실에서 스타일리스트로 일하며, 평소 친분이 있던 사업가들과 연예인들 사이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연예인 B씨는 2010년 2월부터 10월까지 3차례 5000만원을 받고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가졌으며 다른 연예인들도 한번에 300만원부터 200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했다고 검찰 측은 밝혔다.

하지만 수사 선상에 올랐던 또 다른 유명 여자 연예인 C씨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내사 종결 처리됐다.

증권가 소식지, 일명 짜라시로 불리는 소식통에 이름이 오르내렸던 여배우들은 대부분 무혐의거나 이번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루머 유포자를 찾아달라며 경찰 수사를 의뢰한 이다해 조혜련 윤은혜 김사랑 신지 등은 이번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 여배우들이 소식지를 통해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데 대해 신속한 피해회복과 추가피해 방지차원에서 수사를 빠르게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2일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유명 탤런트 B씨 등 여성 연예인 수십 명이 벤처사업가, 기업 임원 등 재력가 남성 등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혀 파문이 일었다.

이후 증권가 소식지 등을 통해 유명 여성 연예인들의 실명이 거론되면서 해당 연예인들이 직접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사태로까지 번졌다.

뉴스팀 news@segye.com 사진=세계닷컴 DB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3/12/19/20131219005460.html>>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세계닷컴은 검찰의 연예인 성매매 혐의 관련 수사 발표를 보도하면서 제목을 「하룻밤 5000만원' 성매매 女연예인 1명 있었다」고 달았다. 검찰 측 발표는 “연예인 B씨는 2010년 2월부터 10월까지 3차례 5000만원을 받고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가졌으며 다른 연예인들도 한번에 300만원부터 200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했다”는 내용이다.

현직 가수, 배우 등 인기 연예인이 다수 연루됐다는 루머가 SNS를 통해 대량 유포되는 바람에 순식간에 국민적 관심사로 등장했고, 실명이 거론된 해당 연예인이 유포자를 처벌해달라고 검·경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파장이 커진 상황을 감안해 볼 때 이 같은 흥미위주의 제목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

더구나 검찰이 서둘러 수사결과를 발표한 것도 이들 유명 연예인들이 소식을 통해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데 대해 신속한 피해회복과 추가피해 방지차원이었다고 기사에서 밝혔음에도 사실을 부풀려 ‘하룻밤 5000만원’이라고 강조한 것은 선정적인 보도라고 볼 수 밖에 없다. 특히 위 기사는 제목의 자극적인 표현 덕분인지 자사 <인기뉴스> 1위에 오르는바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내용을 과장하고 왜곡했을 뿐 아니라 여성을 비하하고 성

적 호기심의 대상으로 폄하했다는 인상을 줘 신문의 신뢰와 품위를 손상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③(선정보도의 금지),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4-3005 신문윤리강령 위반
서울경제 발행인 김 인 영

〈주문〉

서울경제 2014년 1월 6일자(캡처시각) 「전 재산을 … 박대통령 깜짝 발언」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유〉

1. 서울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캡처시각 1. 6 15: 39〉

“박대통령 “통일 시대 준비 ... 설맞아 이산가족 상봉해야”

“남북통합 시작되면 전 재산 한반도에 쏟겠다”

입력시간 : 2014.01.06 13:25:26

6일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남북 통일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설맞이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한 취임후 첫 기자회견 및 신년 정국구상 발표에서 “내년이면 분단된 지 70년이 된다”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대립과 전쟁위협, 핵위협에서 벗어나 한반도 통일시대를 열어가야만 하고, 그것을 위한 준비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지금 국민 중에는 ‘통일비용 너무 많이 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굳이 통일을 할 필요가 있겠나’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저는 한마디로 ‘통일은 대박’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세계적 투자전문가의 얼마전 보도를 봤다. ‘남북통합 시작되면 자신의 전 재산을 한반도에 쏟겠다, 그럴 가치가 충분히 있다, 만약 통일이 되면 우리 경제는 굉장히 도약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라며 “저는 한반도 통일은 우리 경제가 대도약할 기회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통일시대를 준비하는데 핵심적인 장벽은 북핵문제”라면서 “통일을 가로막을 뿐 아니라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개발은 결코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진정성 있는 걸음을 내디딘다면 남북한과 국제사회는 한반도의 실질적 평화는 물론 동북아의 공동 번영을 위한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작년에 이산가족 상봉을 나흘 앞두고 갑자기 취소된 것은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었다”면서 “이번에 설을 맞아 이제 지난 60년을 기다려온 연로하신 이산가족들이 상봉하도록 해서 마음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는 사실상 통일부 등 관계 당국에 이산가족상봉 대북제안을 지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으로 첫 단추를 잘 풀어서 남북관계에 새로운 계기의 대화의 틀을 만들어갈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장성택 처형’ 등에 따른 북한 정정과 관련, “정부도 특 정상황을 예단하기보다는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모든 시나리오에 대해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작년에 장성택 처형을 보면서 우리나라 국민뿐 아니라 세계인들이 참으로 북한 실상에 대해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북한이 어떻게 될 것이고, 어떤 행동으로 나올 것인지는 세계 어느 누구도 확실하게 말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 대통령은 집권 2년차 경제분야 국정구상과 관련, “국민 여러분이 성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우리 경제의 혁신과 제도약을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세우고 성공적으로 이끌어서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3대 추진 전략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하는 개혁을 통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고 ▲창조경제를 통해 역동적인 혁신경제를 만들며 ▲내수를 활성화해 내수와 수출이 균형 있는 경제를 만들겠다고 소개했다.

박 대통령은 먼저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 개혁과 관련, “그동안 우리 사회에 비정상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이 쌓여왔다”면서 “이런 불합리한 점들을 바로 잡고,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기 위해 공공기관의 정상화와 재정·세제개혁, 원칙이 바로 선 경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먼저 공공부문 개혁부터 시작해 나가겠다. 지금 공공기관의 부채는 국가부채보다 많아서 일부 공기업들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공기관 개혁 우선 추진 방침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총량제를 도입해 부문별로 할당량을 부여해서 관리하고,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해 분야별로 점검하면서 막혀 있는 규제를 풀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국회에서 불을 댕긴 개헌 논의와 관련해선 “워낙 큰 이슈이기 때문에 이게 한번 시작되면 블랙홀같이 모두 빠져들어 이것저것 할 그것(업무)을 못낸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으며, 지난해 연말부터 제기돼 온 개각설에

대해선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밖에 박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야당의 특검 요구에 대해서는 “현재 재판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이런 문제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박 대통령은 ‘불통(不通)’ 논란과 관련해선 “진정한 소통이 뭔지에 대해서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면서 “기계적 만남이나,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주장이라도 적당히 수용하거나 타협하는 건 소통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우리 사회를 보면 불법으로 막 때를 쓰면 적당히 받아들여주곤 했는데, 이런 비정상적 관행에 대해 원칙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소통이 안 돼서 그렇다’고 말하는 건 잘못”이라고 말했다./디지털미디어부

(<http://economy.hankooki.com/lpage/politics/201401/e2014010613252693130.htm>)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내용을 다루고 있다. 서울경제는 네이버 <뉴스스탠드> 난에 「전 재산을 … 박대통령 깜짝 발언」이란 제목으로 독자의 눈길을 유도한 뒤 기사 본문에 『朴대통령 “통일 시대 준비 … 설맞아야 이산가족 상봉해야”』라고 메인 제목을 게재하고 부제를 「“남북통합 시작되면 전 재산 한반도에 쏟겠다”』로 달았다.

이 같은 제목은 누가 보더라도 ‘朴대통령이 남북통일 되면 자신의 전 재산을 헌납하겠다’는 뜻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된 기사 내용은 『“세계적 투자전문가의 얼마전 보도를 봤다. ‘남북통합 시작되면 자신의 전 재산을 한반도에 쏟겠다, 그럴 가치가 충분히 있다, 만약 통일이 되면 우리 경제는 굉장히 도약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라며 “저는 한반도 통일은 우리 경제가 대도약할 기회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라는 것 뿐이다.

제목은 기사의 요약적 내용이나 핵심적 내용을 대표해야 하므로, 제목과 기사내용이 유리되어 있을 경우에는 독자를 오도하게 되므로 주의 깊게 작성되

어야 한다.朴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취임 후 처음인데다 국내외적으로 얽힌 문제가 많아 한마디 한마디가 초미의 관심사가 된 상황에서 제3자의 발언을 마치朴대통령의 발언인 것처럼 '깜짝 발언'이라고 소개한 것은 신중한 보도자세가 아니다.

따라서 위 기사의 제목은 내용을 과장하고 왜곡한 측면이 있어 신문의 신뢰와 품위를 손상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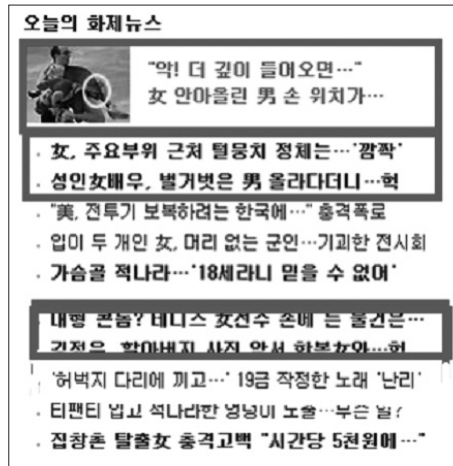
**▲ 2014-3011 신문윤리강령 위반
조인스닷컴 발행인 박 상 순**

〈주문〉

조인스닷컴 2014년 1월 17일자(캡처시각) 1)「“악 더 깊이 들어오면… 女 들 어울린 男 손 위치가…」, 2)「女, 주요 부위 털뭉치 정체는… ‘깜짝」, 3)「성인 女 배우 벌거벗은 男 올라타더니…헉」, 4)「대형 콘돔? 테니스 女선수 손에 든 물건은…」, 5)「김정은, 할아버지 앞에서 한복女와… 헉」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조인스닷컴이 보도한 위 적시 기사는 다음과 같다.



<1. 17. 11:31 캡처시각>

<<http://joongang.joins.com/article/594/13817594.html?ctg=1200>>

- 1) “악! 더 깊이 들어오면...”
女 들어올린 男 손 위치가...



<http://pic.joins.com/photo/article/article.asp?total_id=13663426&cloc=joongang|article|today_topic>

2) 女, 주요 부위 털뭉치 정체는 ... '깜짝'



<http://pic.joins.com/photo/article/article.asp?total_id=13663428&cloc=joongang|article|today_topic>

3) 성인 女배우 벌거벗은 男 올라타더니 ... 혁



<http://pic.joins.com/photo/article/article.asp?total_id=13663434&cloc=joongang|article|today_topic>

4) 대형 콘돔? 테니스 女선수 손에 든 물건은 ...



<http://pic.joins.com/photo/article/article.asp?total_id=13663427&cloc=joongang|article|today_topic>

5) 김정은, 할아버지 앞에서 한복女와 ... 혁



<http://pic.joins.com/photo/article/article.asp?total_id=13663478&cloc=joongang|article|today_topic>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조인스닷컴은 자사사이트 서브페이지 <오늘의 화제뉴스> 난에 위 적시된 제목을 게재하고 각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런데 위 1)은 피겨스케이팅 패어경기 도중 여자 파트너를 들어올리는 남자 선수의 손이 치마 밑에 보일 뿐인데 마치 남자가 못된 행동이라도 한 듯 사실을 왜곡해 표현하였고, 2)는 아시아모델 시상식에서 무대에 오른 출연진 의상의 단순한 장식품을 성과 연관지어 야릇한 표현을 하였으며, 3)은 일본 아베 총리의 신사참배를 규탄하는 내용을 담은 퍼포먼스에 대해 남녀 성행위를 암시하는 표현을 하는 등 지나치게 선정적인 제목을 달았으며, 4)는 더위를 식히기 위해 여자테니스 선수가 든 얼음물 비닐주머니를 콘돔에 빗대 표현하였으며, 5)는 김정은 제1위원장 옆에 한복 입은 여성이 있을 뿐인데 터무니없게 ‘혀’이라고 표현하였다.

따라서 위 기사의 제목은 내용을 과장하고 왜곡했을 뿐 아니라 여성을 비하하고 성적 호기심의 대상으로 폄하했다는 인상을 주 신문의 신뢰와 품위를 손상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 ②(편집변경 및 선정주의 금지)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4-3014 신문윤리강령 위반

매경닷컴 발행인 윤 형 식

<주문>

매경닷컴 2014년 1월 19일자 「북한 여성들, 육체적 피로 달래기 위해 밤마다 … 충격」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매경닷컴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북한 여성들, 육체적 피로 달래기 위해 밤마다 … 충격

기사입력 2014.01.19 09:37:45 | 최종수정 2014.01.19 09:39:48

북한에서 ‘아미돈’이라는 이름의 마약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17일 북한전문매체 데일리NK에 따르면 아미돈을 제조·공급하는 약장사들이 늘면서 이를 복용하는 주민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경지역에 체류 중인 무역상에 따르면 “과거에도 아미돈이 유통되긴 했지만 최근 아미돈을 복용하는 주민이 크게 늘었다”며 “아미돈의 경우 마약성분 순도가 90%에 달해 약 효과가 센 데다 따로 소독할 필요가 없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마약에서 깨면 아미돈을 구하기 위해 집안 살림을 모두 장마당에 싼 값에 내다 팔 정도”라며 “아미돈이 가장 많이 생산되는 지역은 함경남도 함흥으로 전국으로 유통된다”고 전했다.

또 “아미돈의 경우 뱃일이나 고된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들과 몸이 아픈 사람 등이 주로 이용해 설 등 명절 선물에 아미돈을 선물하기도 한다”며 “남성 뿐 아니라 여성도 장사나 부역 등 고된 노동을 하면서 육체적 피로를 달래기 위해 아미돈을 복용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마약을 일종의 치료제로 생각하는 인식이 퍼져있는 데다 제조하는 장사꾼이 당국 검문에 걸려도 본보기가 아닌 이상 뇌물로 얼마든지 풀려날 수 있기 때문에 확신이 쉽다”고 덧붙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http://n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95760&sc=30000051>)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북한전문매체 데일리NK의 보도를 인용해 북한에서 ‘아미돈’이라

는 이름의 마약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기사에는 “남성 뿐 아니라 여성도 장사나 부역 등 고된 노동을 하면서 육체적 피로를 달래기 위해 아미돈을 복용한다”고 밝혔을 뿐인데, 제목은 「북한 여성들, 육체적 피로 달래기 위해 밤마다 … 충격」이라고 달았다.

인용한 데일리NK의 기사도 “마약에서 깨면 아미돈을 구하기 위해 집안 살림을 모두 장마당에 싼 값에 내다 팔 정도”라고 하는 등 과장된 측면이 엿보일뿐 아니라 취재원을 ‘국경지역에 체류 중인 무역상’으로 익명으로 밝혀 신빙성이 상당히 떨어진다.

더욱이 위 기사는 북한여성들이 언제 마약을 복용하는지 적시하지 않았음에도 「육체적 피로 달래기 위해 밤마다 … 충격」이라고 제목을 달아 독자에게 억측이나 성과 관련된 불필요한 상상력을 자극하고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4-3018 신문윤리강령 위반

동아닷컴(스포츠동아) 발행인 김 일 흥

〈주문〉

스포츠동아(sports.donga.com) 2014년 3월 12일자(15시48분) 1)「정우성과 불륜...17세 연하녀」, 3월 12일자(19시28분) 2)「여승무원 매춘부 만드는 유니폼, 쇼킹해」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스포츠동아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뉴스스탠드 3. 12. 15:48 캡처〉

‘마담뽕덕’ 정우성 목격담, 미모 팔짱女 누구? 모델출신 이솜

입력 2014-03-12 13:03:00

배우 정우성의 목격담이 전해지면서 극 중 상대 배우 이솜이 주목받고 있다. 11일 각종 SNS에는 정우성 전주 목격담들이 속속 등장했다. 목격담과 함께 공개된 한 사진 속에는 정우성과 한 여성이 팔짱을 낀 채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다. 여성은 모델 출신의 이솜으로 알려졌다.

전주영상위원회는 공식 트위터를 통해 “전주 객사에서 영화배우 정우성 씨가 영화를 촬영하고 있다는 제보가 속속 올라오고 있다”며 “정우성 씨 맞다. 정우성 씨가 영화 ‘마담 뽕덕’을 전주에서 촬영하고 있다”고 촬영 소식을 전했다.

정우성은 영화 ‘마담 뽕덕’에서 치명적인 매력을 가졌으며 성추행 논란에 휩싸여 지방으로 좌천된 국문과 교수 심학규 역을 맡았다. 이솜은 정우성의 상대 불륜녀 역으로 등장한다.

이솜은 173cm 큰 키와 동양미를 지닌 모델 출신의 배우다. 이솜은 2008년 케이블채널 Mnet 모델 선발 프로그램 ‘체크 잇 걸’로 데뷔, 영화 ‘맛있는 인생’, ‘뒷담화: 감독이 미쳤어요’, ‘사이코메트리’, ‘하이힐’ 등에 출연했다.

‘정우성 목격담’에 누리꾼들은 “마담뽕덕 정우성 목격담, 아 나도 실물 한 번 보고싶다”, “마담 뽕덕 정우성 목격담, 얼마나 잘 생겼길래”, “전주에서 정우성 만나면 어떤 기분일까?”, “우성씨 꼭 커피 광고 찍는 것 같다”, “마담뽕덕 정우성 목격담, 우월해서 몰라볼 수 없겠다”, “마담뽕덕 궁금해”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http://sports.donga.com/home/3/all/20140312/61646397/3>〉

스포츠동아

구독하기 | 이용자 한마디 | 03-12 19:28 편집

TOP **얼짱 기상캐스터, 미성년자와...**



이솜 vs 리빙빙 피격 노출, ... 김연아 첫 공식석상, 연애하...

HOT CLICK

女승무원 매춘부 만드는 유니폼? '쇼킹해'

- 정우성과 불륜...17살 연하女 누구?
- 황정순 친필 유언장 공개... '내용 충격적!'
- 유명래퍼 아내 가슴 지퍼 열려... '담함'
- 김연아 "이상화에게 '상느님'이라 부르고 싶다"
- 박태환 '괘씸죄' 1년 6개월이나 괴롭혔다

<뉴스스탠드 3. 12. 19:28 캡처>

유명 항공사, 승무원 성상품화 논란 ... '경악'

입력 2014-03-12 17:50:00

일본 중견 항공사 스카이마크의 여성 승무원의 유니폼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일본 산케이신문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스카이마크는 5월 말부터 취항하는 에어버스 A330의 국내선(일본)에 탑승하게 될 여성 승무원들의 유니폼을 초미니스커트 형태로 디자인해 구설에 휘말렸다.

이 유니폼은 지난해 12월 프랑스 에어버스 공장에서 첫 선을 보였고, 이를 두고 온라인 등에서 찬반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또 지난 2월에는 항공노동조합에 가입된 승무원으로 구성된 승무원연락회가 “긴급한 보안 업무에 지장이 있다”며 “여성을 상품 취급하고 성희롱 행위를 유발할 수 있다”며 국토교통성에 지도를 요청했다.

이에 스카이마크 사장은 지난 7일 하네다공항에서 개최된 A330의 내람회에서 “승무원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 희망자들만 입게 할 것”이며 “기간 한정으로

성희롱의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예정대로 유니폼을 적용하겠다고.

한편 스카이마크 에어버스 A330는 5월 31일 하네다~후쿠오카 노선을 시작으로, 나하 선, 삿포로 선까지 일본 내에서만 운항된다.

사진 | 스카이마크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http://sports.donga.com/NewsStand/3/all/20140312/61657599/4>〉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스포츠동아는 자사 홈페이지를 소개하는 포털사이트 네이버 <뉴스스탠드>에 「정우성과 불륜 … 17세 연하녀」 및 「여승무원 매춘부 만드는 유니폼, 쇼킹해」란 제목을 게재하고 이를 클릭하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기사를 열어보면 기사의 제목은 각각 「'마담뽕덕' 정우성 목격담, 미모 팔짱女 누구? 모델출신 이솜」 및 「유명 항공사, 승무원 성상품화 논란 … '경악'」으로 돼 있다. 「정우성과 불륜 … 17세 연하녀」 기사의 내용도 정우성의 드라마 촬영장 이야기를 전하는 것으로, 정우성의 불륜과 거리가 멀다. 이는 「여승무원 매춘부 만드는 유니폼, 쇼킹해」도 마찬가지다. 정우성과 불륜을 한 것으로 왜곡한 17세 연하녀는 함께 영화를 촬영 중인 상대배우 이솜이고, 여승무원을 매춘부로 만드는 유니폼이 아니라 실은 여승무원의 유니폼을 초미니로 제작, 착용하게 한다는 것 뿐이다.

이는 독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보다 과장 및 왜곡된 제목으로 불필요한 상상을 유도해 독자를 기만하고 있다는 의심을 살 수 있다. 이용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내용과 동떨어진 제목을 게재하는 것은 정확성, 객관성이 결여된 보도일 뿐만 아니라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윤리위원회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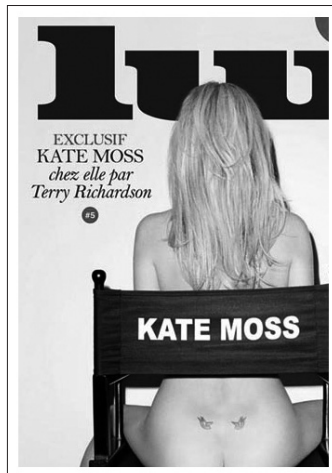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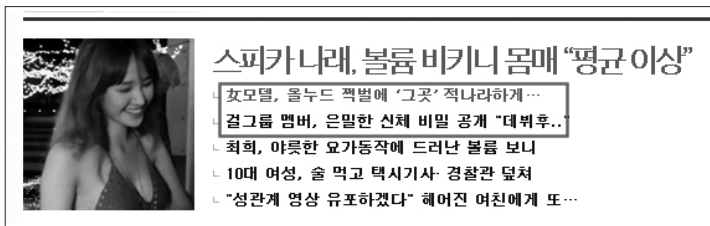
▲ 2014-3019 신문윤리강령 위반
일간스포츠 발행인 정 경 문

〈주문〉

일간스포츠(isplus,joins.com) 2014년 3월 12일(16시 22분) 「여모델, 올누드 찍벌에 ‘그곳’ 적나라하게…」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일간스포츠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3. 12. 16:22 캡처〉

『톱 모델 케이트 모스, 전라의 뒤탄 공개 ‘파격’

세계적인 모델 케이트 모스가 전라의 뒤탄을 드러내 눈길을 끈다.

최근 프랑스의 남성지 루이(Lui)는 공식 트위터 계정에 전라 상태의 케이트 모스의 모습이 담긴 잡지 표지 사진을 공개했다. 유명 사진작가 테리 리처드슨과 함께 작업한 이번 촬영에서 케이트 모스는 자신의 이름이 적힌 감독 의자에 앉아 매혹적인 뒤태를 뽐냈다.

한편 올해 마흔 살이 된 케이트 모스는 유명한 남성웹사이트 AskMen.com에서 남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여신 99명중 10위에 올라 건재함을 과시했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사진= Lui 트위터 캡처』

〈<http://isplus.joins.com/article/666/14129666.html>〉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일간스포츠는 자사 메인페이지를 소개하는 포털사이트 네이버 <뉴스스탠드>에 「여모델, 올누드 찍벌에 ‘그곳’ 적나라하게」란 제목을 게재하고 이를 클릭하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기사를 열어보면 기사의 제목은 각각 「툭 모델 케이트 모스, 전라의 뒤태 공개 ‘파격’」으로 돼 있다. 뉴스스탠드 제목에 따르면 벌거벗은 여 모델이 다리를 째 벌려 은밀한 곳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는 선정적인 내용이지만, 실체는 모델 케이트 모스가 나체의 뒷모습을 보이는 내용이다. 이는 독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보다 과장 및 왜곡된 제목으로 불필요한 상상을 유도해 독자를 기만하고 있다는 의심을 살 수 있다.

이용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내용과 동떨어진 제목을 게재하는 것은 정확성, 객관성이 결여된 보도일 뿐만 아니라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윤리위원회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4-3020 신문윤리강령 위반
한경닷컴 발행인 황 재 활

〈주 문〉

한경닷컴(hankyung.com) 2014년 3월 12일자(17시16분) 「20대 女직장인, 은밀한 ‘이중생활’…주말마다 가는 곳이 ‘깜짝」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한경닷컴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3. 11. 17:16 캡처〉

『직장인의 봄·봄·봄 ... 쌓이는 청첩장 보니 봄 맞구나!

입력2014-03-10 21:14:44 수정2014-03-11 04:27:11 2014-03-11 A27면

왔구나 싶으면 도망가고 없는 찰나의 계절

내려앉는 눈꺼풀, 눈썹신 저 커풀 ... 찬란해서 더 가혹한 봄날의 햇살이여

골프·캠핑 ... 달콤피곤한 주말

상사 모시고 필드 나가야하고, 가족들 성화에 바비큐 굽고...

잠에 취하는 ‘잠잠한 날’ 간절

“봄바람 휘날리며~ 흠날리는 벚꽃 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돌이 걸어요~♫”

눈부시게 화창했던 지난 일요일. 유통업체에 다니는 ‘골드 미스’ 윤 과장은 버스커버스커의 노래 ‘벚꽃 엔딩’을 스마트폰 최고 볼륨으로 틀어놓고 제주 7번 올레길을 묵묵히 걸었다. 노래 가사에선 돌이 걷는다고 했지만 그녀는 홀로 뚜벅이하며 걸었다. 고기국수, 흑돼지, 마라도 짜장면 등등 제주 맛집도 주말 동안 혼자서 섭렵했다.

이런 모습 좀… 궁상맞지 않느냐고? 유난히 계절을 타는 윤 과장에게 이런 주말 여행은 봄을 맞는 하나의 ‘힐링’이자 ‘의식’과도 같다.

“이렇게 좋은 날 집에 있음 더 울적하잖아요. 햇빛만 보면 괜히 두근두근해요. 사춘기 때는 오히려 조용했는데 30대 중반 접어들고 더 봄을 타는 것 같아요.”

◆서른 즈음이라 더 울적한 봄

일조량 증가→기온 상승→체온 상승→근육 이완→세로토닌 호르몬 분비 촉진→감정 변화. 현대 의학은 사람들이 봄을 타는 이유를 이렇게 분석한다. 그런데 증권사 정 대리가 요즘 심하게 감성적인 건 꼭 세로토닌 때문만은 아닌 것 같다. 스물아홉 꽃처녀인 그녀에게 이번 봄은 ‘20대에 맞는 마지막 봄’이라 더 각별하게 다가온다. 떠나가는 20대에 대한 미련과 아쉬움까지 더해져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얼마 전 김광석의 ‘서른 즈음에’를 듣는데 예전과는 달리 눈물이 주루룩 나는 거 있죠.”

정 대리는 마음을 다잡기 위한 해결책을 ‘몸을 가만 놔두지 않는 것’에서 찾았다.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봄 마라톤에 참가신청을 했고, 주말마다 서울 홍대 인근에서 춤을 배우는 스윙댄스 동아리에도 가입했다. 대학 선후배 중 싱글녀들끼리 푹푹 뭉쳐 전국 맛집을 탐방하는 ‘식신원정대’도 조직했다. 하지만 그녀를 바라보는 직장 동료들은 걱정스런 눈치다. “자꾸 싱글녀들끼리 뭉쳐 다니면 남자 더 못 만나는데… 정 대리는 지금 돌아다닐 게 아니라 소개팅을 해야 돼요.”

◆벚꽃이 지기 전 사랑을 만들리라

만물이 소생하는 봄은 싱글들의 연애세포를 자극한다. 서울 여의도에서 일하는 3년차 직장인 K는 “이달 안에 어떻게든 여자 친구를 만들겠다”며 평일 주말 가리지 않고 소개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입사 이후 봄에는 늘 솔로였다는 그는 매년 4월 열리는 윤중로 벚꽃축제에 바글바글 몰려드는 커플들을 바라보며 ‘난 무엇을 위해 일만 하고 사나’하는 공허함에 시달렸다고. K는 여자들 외모를 간간하게 따졌던 외모지상주의(?)를 버리고 “이달엔 어떻게든 눈을 최대한 낮춰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홍보회사에 다니는 27세 싱글녀 Y도 요즘 마음이 싱숭생숭하단다. ‘썸남(사귀는 건 아니지만 마치 곧 사귄 듯 묘한 관계를 유지하는 남자)’이 될 만한 남자들과 메신저를 주고받는 횟수도 부쩍 늘었다고. “결혼 시즌이라 슬슬 청첩장도 밀려들어서 기분이 더 꼴꼴해요. 조건 안 따질 테니 누가 나 좀 확 끌어주면 안 되나?”

◆주말에는 좀 쉬고 싶어요

봄을 맞아 감수성이 샘솟는다는 건 어찌보면 쯤다는 증거일 것이다. 40대 유 부장에게 봄이란 ‘주말이 사라지는 피곤한 계절’이다. 겨우내 잠잠했던 골프 접대 약속이 뿔뿔이 차면서 유 부장의 토요일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그는 “새벽부터 가족들 깰까봐 주섬주섬 눈치 보며 나오는 것도, 상사를 픽업해 운전기사 역할을 하는 것도, 거래처 손님들을 모시고 골프를 쳐야 하는 모든 것이 적잖은 스트레스”라고 털어놨다.

유 부장은 종합비타민과 홍삼농축액을 잔뜩 챙겨 먹으며 체력 비축에 나섰다. “해가 갈수록 일정은 뻘뻘해지는데 춘곤증은 왜 이리 심해지는지... 아! 세월이 무상합니다.”

결혼 2년차 워킹맘 P 역시 따뜻해지는 날씨가 두렵다. 소문난 ‘캠핑광(狂)’인 남편에게 전국 방방곡곡을 끌려다닐 판이어서다. 신혼 때 캠핑 재미에 눈을 뜬 P의 남편은 성과급을 몽땅 쏟아부어 캠핑용품을 사더니만, 토요일마다 P를 깨워 캠핑장으로 향한다. “잠 좀 자게 놔둬!” “혼자 가!”라고 발버둥(?)쳐봤지만

남편의 불도저 같은 추진력에 늘 무릎을 꿇는다고.

“이젠 그냥 순순히 따르세요. 남편이 깨우면 ‘응, 알았어’ 하고 좀비처럼 일어나 조수석에서 부족한 잠을 자죠. 그래도 막상 캠핑장에서 맑은 공기 쐬면 기분 전환이 되는 것 같고… 좋긴 좋더라고요. 땀 뻘뻘 흘리며 바비큐 구워주는 남편 모습이 고맙기도 하고.” 결론은 남편 자랑인 것인가.

◆봄 신상 자랑하고 가실게요

봄이 되면 여성들의 옷차림도 가볍고 화사해지기 마련. 하지만 자칭 ‘패셔니스타’를 자부하는 A의 올봄 콘셉트는 사내에서 이런저런 입길에 오르고 있다. 잔뜩 쇼핑해 둔 올봄 신상품들을 과시하듯 A는 매일 화려한 패션을 선보이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무심한 듯 시크하면서도 쿠티르적이면서 과감한 노출도 마다하지 않는 그의 옷차림이 보수적인 분위기의 이 회사에선 ‘투 머치(too much·과하다는 뜻)’라는 것.

“100m 밖에서도 알록달록한 A를 딱 알아볼 수 있으니 편하긴 한데요. 여기는 밀라노가 아니고 광화문인데 좀… 그렇다고 여자 후배에게 ‘덜 파인 걸 입으라’고 말하기도 곤란하고. 어쩔 수 없죠.”

백화점에서 일하는 34세 유부남 박 과장은 봄옷 사느라 스트레스가 적지 않았다고 하소연한다. 비즈니스 캐주얼이 정착된 지는 꽤 됐지만, 새로 취임한 최고경영자(CEO)가 옷을 ‘잘’ 입으라고 강조하고 있어서다. “고객들에게 패션을 파는 회사인 만큼 직원들부터 스타일이 남달라야 한다”는 CEO 메시지가 떨어진 이후 이 회사 남자 직원들의 의복비 부담이 확 늘어났다고.

“다들 멋스럽게 입고 일하니 사무실 분위기는 확실히 달라졌어요. 그런데 남자 옷도 멋진 건 다 비싸다고요 ㅠㅠ. 애들 학원비에 월세도 곧 오를 텐데. 계절 바뀔 때마다 부담이 좀 많아질 것 같네요.”

임○○ 기자 tardis@hankyung.com」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4031097221&nv=3>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한경닷컴은 직장인의 애환이나 풍속도를 그린 [金과장 & 李대리] 기획시리즈를 게재하면서 자사 홈페이지를 소개하는 포털사이트 네이버 <뉴스스탠드> 난에 「20대 女, 직장인 은밀한 ‘이중생활’ … 주말마다 가는 곳이 ‘깜짝’이라는 제목을 게재하고 이를 열어 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 기사는 직장인의 애환과 풍속도를 그린 기획기사로, 20대 녀의 은밀한 ‘이중생활’이라는 제목에서 풍기는 기사와는 거리가 멀다. 20대 녀의 주말이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봄 마라톤에 참가신청을 하고, 서울 홍대 인근에서 춤을 배우는 스윙댄스 동아리에도 가입하는 정도다. 대학 선후배 중 싱글녀들끼리 푹푹 문쳐 전국 맛집을 탐방하는 ‘식신원정대’를 조직하는 것도 은밀한 이중생활이라고 할 수 없다. 멀쩡한 기사를 두고 과장, 또는 왜곡된 제목으로 독자를 기만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한경닷컴은 기사와는 관계가 먼 제목으로 억측이나 불필요한 상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이용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제목과 동떨어진 내용의 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정확성, 객관성이 결여된 보도일 뿐만 아니라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윤리위원회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4-3021 신문윤리강령 위반

한경닷컴 발행인 황 재 활

<주문>

한경닷컴(hankyung.com) 2014년 3월 12일자(21시9분) 「女대생, 성추행한 교수와 한방서 ‘이럴 수가’」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한경닷컴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뉴스스탠드 3. 12. 21:9 캡처〉

『학생들도 1인 시위 “성추행 교수 물러가라”』

성추행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충남 공주대 교수들이 전공과목을 개설해 피해 학생들에게 수업을 하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성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충남성평등교육문화센터는 12일 공주여성인권센터 등 각종 여성단체와 함께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성추행 교수의 강의 중단과 함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부와 공주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에 이어 교육부 감사관실을 방문해 성추행 교수에 대한 대학 측의 징계 절차가 적절했는지 교육 당국의 감사를 촉구할 예정이다.

충남성평등교육문화센터의 한 관계자는 “공주대와 교육부 관계자들이 자신을 추행한 교수에게 수업을 듣는 학생의 입장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는지 의문”이라며 “이들을 교단에 계속 서게 하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를 불안하게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학생들도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공주대 미술교육과 성추행·성희롱사건 공동대책위 학생들은 12일 학내에서 ‘학생의 수업권을 보장하라’며 1인 시위를 벌였다.

학생들은 총학생회 및 총여학생회 등과 함께 성추행 교수의 직위 해제를 촉구하는 서명 운동도 지속적으로 벌여 나갈 방침이다.

한편 공주대 미술교육과 교수 2명은 강의실 등에서 여학생 4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각각 벌금 8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받았음에도 이번 학기 전공 4과목을 개설해 학생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공주연합뉴스) 한 ○○ 기자 jkhan@yna.co.kr」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4031263718&nv=3>〉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한경닷컴은 성 추행 교수의 대학 전공과목 강의 개설에 항의하는 여성단체들의 소식을 전하면서 자사 메인페이지를 소개하는 포털사이트 네이버 <뉴스스탠드> 난에 「女대생, 성추행한 교수와 한방서 ‘이럴수가’」제목을 게재하고 이를 클릭하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공주발 연합뉴스를 그대로 인용한 이 기사는 공주대 미술교육과 교수 2명이 강의실 등에서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벌금을 선고받았음에도 전공과목 강의를 개설해 여성단체와 학생들의 항의를 받고 있다는 것뿐이다. 그럼에도 여대생이 성추행 교수와 한방에서 지내면서 또 다른 피해가 우려된다는 억측과 불필요한 상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용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제목과 동떨어진 내용의 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정확성, 객관성이 결여된 보도일 뿐만 아니라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 편집변경 및 선정주의 금지

▲ 2013-1111 신문윤리강령 위반 경인일보 발행인 송 광 석

〈주문〉

경인일보 2013년 3월 25일자 14면 「한국 ‘송곳니’ 이호석, 일본 목덜미를 찌르다」 기사의 제목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경인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한국 대학 선발대표팀이 4년만에 제10회 덴소컵 한·일 대학축구 정기전 승리를 거뒀다. 김종필(동국대)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24일 안양종합운동장에서 진행된 덴소컵 일본 대학선발팀과의 경기에서 정재혁(홍익대)과 이호석(동국대)의 연속골을 앞세워 2-0으로 승리했다. 최근 3년간 2무1패로 주춤한 모습을 보였던 한국은 이날 승리로 4년만에 승리를 거두는 기쁨을 만끽했다.

또한 한국은 지난 2004년 이후 덴소컵 상대 전적을 4승2무4패로 동률을 만들었고 역대 대학선발 전적은 15승8무9패로 우위를 유지했다.(중략)

사령탑을 맡은 동국대 김종필 감독은 일본을 상대로 4-2-3-1 포메이션을 꺼내들었다. 김 감독은 대회를 앞두고 미디어데이에서 밝힌 바와 같이 최전방 공격수로 이호석(동국대)을 기용했다.(중략)

한국은 전반부터 승기를 잡았다. 전반 5분 김용진(건국대)의 슈팅이 골망을 벗어났지만 5분 뒤 상대 반칙으로 잡은 페널티킥 기회를 정재혁(홍익대)이 침착하게 밀어 넣어 선제골을 뽑는데 성공했다.(중략)

후반 23분과 24분 골키퍼와의 1대1 상황에서 잇따라 득점에 실패한 이호석은 후반 27분 김용진의 헤딩 패스를 추가골로 연결했다.(후략)』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경인일보의 위 기사는 덴소컵 한·일 대학축구 정기전에서 한국 대학 선발대표팀이 4년만에 승리했다는 내용이다.

기사는 한국이 정재혁(홍익대)과 이호석(동국대)의 연속골을 앞세워 2-0으로 일본에 승리했다고 보도했다.

편집자는 최전방 공격수 이호석이 골을 넣은 것에 주목해 제목을 「한국 ‘송곳니’ 이호석, 일본 목덜미를 찌르다」로 뽑았다. 그라운드에서의 이호석의 날카로움을 ‘송곳니’로 표현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나, ‘일본 목덜미를 찌르다’와 연결되면서 끔찍한 상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아무리 스포츠 경기의 박진감과 생동감을 살리기 위한 보도라 할지라도 상대팀을 ‘송곳니’의 공격의 대상이 되는 ‘목덜미’로 비하하고, ‘찌르는’ 것으로 공격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은 극적인 표현의 도를 넘어 국민의 부정적인 대일 적대감정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수 있는 선정적인 편집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 같은 제목 달기는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 「편집지침」 ②(편집변경 및 선정주의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3012 신문윤리강령 위반

한경닷컴 발행인 황 재 활

〈주문〉

한경닷컴 2013년 9월 4일(캡처시각) 「신입 여직원 주차장에서 … 충격」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한경닷컴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9. 4. 16:47 캡처>

『[金과장 & 李대리] 점심 굶고 통장 6개 관리 李대리, 재테크 여왕 아닌 '명품백' 중독女

직장인 '넘사벽 품생품사'

고급 수입차 2대 굴리는 金실장, 월세 사느니 車 속에서 먹고 자고...

'최강 동안' 朴과장

회사 MT때 가져온 가방엔 이름 생소한 화장품 가득 ... 20대 여직원도 혀 내둘러

대기업에 다니는 A과장은 사내에서 패셔니스타로 통한다. 183cm의 훗칠한 키에 아무나 소화하기 어려운 스타일의 옷까지 잘 입고 다녀 여직원들을 설레게 하는 꽃미남이다. 30대 중반인데도 웬만한 20대보다 피부가 좋아 사내에선 성별 나이를 불문하고 그를 찾아와 비결을 묻는 사람들이 줄을 잇는다.

최근 2박3일간의 회사 워크숍에서 그만의 '비결'이 공개됐다. 큼직한 가방을

들고 나타난 A과장은 숙소에 들어서자마자 짐을 꺼내기 시작했다. 화장품, 화장품, 화장품, 화장품, 화장품... 큰 가방에서 서로 다른 종류의 화장품 9개가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본 여직원들은 깜짝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뿐만이 아니다. 마스크 팩과 오이는 물론 위아래 색상을 맞춘 운동복을 세 벌이나 꺼내놓는 게 아닌가.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여직원 C대리는 “평소 자기관리를 열심히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며 “여자인 나도 안 쓰는 종류의 화장품까지 갖고 있는 것을 보고 할 말을 잃었다”고 혀를 내둘렀다.

최근 직장 내에서 자기관리를 열심히 하고 남다른 패션 감각과 뛰어난 외모를 자랑하는 신세대가 늘고 있다. 하지만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고 했다. 도가 지나쳐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직장인도 적지 않다.

◆명품만 있으면 굶어도 좋다?

중견그룹에 다니는 20대 후반의 H대리(여). 평소 얌전하고 검소한 것으로 알려진 그는 젊은 나이에도 6개의 저축 통장을 갖고 있어 ‘재테크의 여왕’으로 불린다. 몇만원 수당이 나오는 날에도 바로 은행으로 달려가 입금한 후 자리로 돌아와서는 통장 잔액을 인터넷에 기록해 둘 정도로 꼼꼼하다. 동료와 다 같이 점심을 먹으러 나가도 6000원이 넘는 메뉴를 고르는 법이 없다. “이번 달 저축액 목표를 채우지 못해 돈을 아껴야 한다”며 굶는 날도 더러 있다. 다들 H대리가 이토록 저축에 인간힘을 쓰는 이유를 궁금해했지만 누구도 시원한 답변을 듣지는 못했다. 평소 옷차림과 행동을 토대로 가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일 것이라고 짐작만 할 뿐이었다.

하지만 미스터리가 풀리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점심시간에 흐뭇한 표정을 지으며 통장을 정리하던 H대리가 갑작스러운 부장의 호출에 자리를 비운 사이, 옆자리에 앉은 K과장이 통장을 들춰보면서 모두의 궁금증이 ‘허탈하게’ 해결됐다. 몇천원 또는 몇만원 단위로 입금된 내역을 살펴보던 K과장의 눈에 맨 마지막 장에 쓰여 있는 ‘○○○백, 기다려. 언니가 금방 데리러 갈게’라는 글귀가 들어왔다.

빵 터진 K과장은 다른 장도 유심히 들여다봤다. 브랜드와 상품 종류만 다를

뿐, 역시 비슷한 내용의 문구가 쓰여 있었다. 겉모습과는 달리 H대리가 사실은 명품 중독녀였던 것이다. K과장은 “옆에서 돈 쓰는 걸 보면 안쓰러울 때가 많아 밥이나 커피도 많이 사줬다”며 “그렇게 저축에 집착한 이유가 명품 때문이었다는 걸 알고 나서부터는 100원 쓰는 것도 아까워 같이 밥도, 차도 안 마신다”고 씩씩해했다.

◆ 집은 없어도 차는 폼나게

대기업 S상사에 다니는 M실장은 자타가 공인하는 자동차 마니아다. 사무실 책상 속 액자에 고급 수입차 사진이 즐비하고 틈날 때마다 해외 유명 자동차 사이트를 들여다본다.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고급 브랜드 수입차도 두 대나 된다. 평소 옷도 세련되게 입고 값비싼 시계를 차고 다녀 직원들은 그가 분명 부잣집 외동아들일 것으로 생각했다.

M실장의 실체가 드러난 건 출장길에서였다. 그와 지방 출장을 같이 가게 된 여자 후배 B대리는 그가 소유한 고급 수입 세단을 보고 입이 썩 벌어졌다. 기대에 한껏 부풀어 M실장의 차에 올라탄 B대리는 순간 자신의 눈을 의심해야 했다. 신고 벗어 놓은 양말과 와이셔츠, 담요 베개 등이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닌가. 자세히 보니 뒷좌석 구석에는 버너도 있었다.

“실장님, 요즘 집에 자주 못 들어가셨나 봐요.” B대리의 물음에 M실장은 뜻밖에도 답변을 했다. “집에 매일 들어가지. 이 차가 내 집인데.” 이어지는 M실장의 설명에 B대리는 그에 대한 환상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 “갈수록 오르는 월세를 보면서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군. 이럴 바엔 차라리 내 집처럼 살 수 있는 좋은 차를 사는 게 낫겠다 싶어서 보증금 빼서 차 두 대에 다 쏟아부었지.”

◆ 명품 마니아의 굴욕 사건

화장품 회사 홍보부서에서 일하는 Y대리는 모두가 인정하는 패셔니스타다. 굽이 13cm나 되는 킬힐에 아슬아슬하게 짧은 길이의 초미니 스커트, 쇠골이 훤히 드러나는 블라우스를 입고 다니는 그녀는 명품 애호가이기도 하다.

몇 달 치 월급을 모아 명품 가방을 장만한 뒤 동료들에게 자랑하는 게 취미인 Y대리는 올 3월 입사한 신입사원 D씨가 영 탐탁지 않다. 미인형 얼굴이지만

꾸미는 데는 쟁병이어서다.

보다 못한 Y대리는 다른 직원들이 모두 있는 자리에서 큰 목소리로 D씨에게 돌직구를 날렸다. “오늘 입은 옷은 도대체 언제 산 거야? 명색이 화장품 회사에 다니는데 싼 것만 찾지 말고 자신한테 투자 좀 해. 월급쟁이가 저축해봐야 얼마나 모은다고…”

그로부터 며칠 후, 회사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후줄근해 보이기만 하던 D씨가 유명 패션그룹 E사 오너의 외동딸이라는 소문이었다. D씨가 퇴근 후 회사에서 떨어진 주차장에서 1억원이 훌쩍 넘는 수입차를 타는 장면을 봤다는 직원들도 나왔다.

소문을 들은 Y대리는 팀장에게 달려가 소문이 진짜냐고 물었다. 그는 팀장의 답변을 듣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 앉았다. “하도 부탁을 해서 아무 말 못했지. 소문이 맞아. 잘 사는 티도 전혀 안 내고 일부러 더 수수하게 하고 다니는 게 예뻐 보이기도 해서 비밀 지켜줬지.” 이날 이후로 Y대리는 패션이나 쇼핑 얘기가 나오면 입을 꼭 다물거나 슬쩍 자리를 피한다.

김○○/박○○ 기자 bk11@hankyung.com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3090289831&nv=3>>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한경닷컴은 직장인의 애환이나 풍속도를 그린 [金과장 & 李대리] 기획시리즈를 게재하면서 자사 메인페이지를 소개하는 포털사이트 네이버 <뉴스스탠드> 난에 허벅지 일부가 드러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이 다리를 꼬고 앉은 모습의 사진 아래 「신입 여직원 주차장에서 … 충격!」이라는 제목을 게재하고 이를 열어 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사진과 관련된 기사 내용은 수수한 차림의 신입사원이 유명 패션그룹 오너의 딸이라는 소문이 난 뒤 주차장에서 억대의 수입승용차를 타고 다닌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는 것 뿐이다. 그런데도 매경닷컴은 기사와 전혀 상관없는 사진을 게재하고 이 같은 제목을 달아 마치 여직원이 주차장에서 무슨 사고

라도 당하기라도 한 듯 억측이나 불필요한 상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이용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제목과 동떨어진 내용의 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정확성, 객관성이 결여된 보도일 뿐만 아니라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 「보도와 평론」, 제7조 「언론인의 품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 「편집지침」 ②(편집변경 및 선정주의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3021 신문윤리강령 위반
한경닷컴 발행인 황재활

〈주문〉

한경닷컴 2013년 9월 10일자(캡처시각) 「女직원, 추석때 출근했더니 부장이 '충격」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한경닷컴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9.10 14:03<캡처시각>

[金과장 & 李대리] “고향이 서울에 기독교랬지?” … 명절마다 당직서는 비극이

“시댁 잔소리, 느낌 아니까” … 차라리 출근하고 수당 챙겨

추석 근무자의 애환

美FOMC 결과, 추석 발표 … 증권사 직원들 “하필이면…”

“출근해, 같이 편안하게…” 기러기 부장님과의 이틀… 하나도 안 편하거든요
H증권사 리서치센터에서 애널리스트로 일하는 이 대리는 이번 추석 연휴 고향에서 휴대폰을 꺼놓을 순 있어도 노트북컴퓨터는 끌 수 없다. 전 세계 주식시장의 향방을 결정할 9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결과가 추석 당일(19일) 오전 3시(한국시간)에 공개되기 때문이다. 이 대리는 19일 이후 숨가쁘게 돌아갈 미국·유럽 등 글로벌 증시의 흐름을 체크하고 분석해 23일 발간할 보고서에 담아야 한다. 연휴 마지막 날인 22일 출근은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 대리는 “연휴 5일 중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날이 며칠이나 될지 모르겠다”며 “FOMC 결과 발표가 하필이면 19일인지…”라고 말끝을 흐렸다.

직장인들이 손꼽아 기다리던 5일간의 추석 연휴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16, 17일 의무 휴무를 시행한 일부 기업의 직원들은 지난 주말부터 사실상 9일간의 휴가에 들어갔다. 하지만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추석 연휴 때도 출근해야 하는 김 과장, 이 대리들에겐 ‘다른 나라’ 얘기다.

◆연휴 때 출근해도 수당은 받지 마라(?)

대기업 전자계열사에 근무하는 권 대리(29·여)는 이번 추석 연휴 후반인 토요일이나 일요일 회사에 나와야 한다. 다음주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관련 자료를 정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부모님은 “집에서 일하면 안 되냐”고 하시지만 권 대리 회사는 업무용 노트북과 자료의 외부 반출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결국 ‘출근하고 업무일지 올리면 수당 나오니까…’라며 스스로를 위로한다.

그런데 지난주 부서원들 사이에서 ‘호랑이’로 통하는 박 부장으로부터 이런 이메일을 받고 많이 당황했다. “요즘 긴축 경영인 것 알지? 직원들 연휴 때 출근시키지 말라는 게 윗선의 지시야. 출근을 하든 안 하든 수당은 신청하지 마.” 권 대리는 “억울하지만 박 부장이 무서워서요. 지시사항 어기면 불호령이 떨어

질 게 분명하거든요. 이번 연휴엔 일만 하고 수당은 포기해야겠네요”라며 씩씩해했다.

대기업 B사 기획팀에서 일하는 김 과장(35·남)은 이번 추석 연휴 때 부모님을 뵈러 고향인 부산에 내려가는 것을 포기했다. 추석 연휴가 끝나는 23일(월요일) 사장 주재 회의가 예정돼 있어서다. 이날 회의 때 기획팀장이 발표를 하는데 관련 자료 만드는 건 ‘과워포인트의 신’으로 불리는 김 과장의 몫. 게다가 연말 인사에서 전무 승진을 기대하는 팀장은 이번 기회에 사장에게 잘 보이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

팀장은 김 과장을 불러 이렇게 말했다. “추석 연휴 첫날인 수요일과 토요일에만 출근해 자료를 만들자고. 다른 연휴는 푹 쉬고.” 문제는 김 과장의 고향이 부산이라는 점. 그는 그냥 서울에 남아 있는 쪽을 택했다. 5일간의 황금 연휴를 기대했던 꿈도 함께 날아갔다. “솔직히 연휴가 끝나는 날에는 중요한 회의를 잡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연휴 때는 푹 쉬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지난 7월 보험회사로 이직한 최 대리(30·남). 이번 연휴 때 친구들이 중국 여행을 가자고 제안했지만 고심 끝에 거부했다. 업종을 바꿔 이직한 탓에 업무 적응이 안 됐기 때문이다. 눈물을 머금고 회사에서 요구하는 동영상 강의를 들으러 출근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주 회식 때 최 대리는 자신의 입방정을 닦할 수밖에 없었다고. 경력직원으로서 윗분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 “전 이번 추석 연휴 때 금요일 토요일은 출근할 생각입니다. 업무를 익혀야 할 것 같아서요”라고 말한 게 화근이었다. 이 말을 들은 부장이 반색을 하며 “그래? 최 대리 그럼 우리 같이 즐거운 추석을 보내볼까? 나도 출근함세”라고 말했던 것. 알고보니 부장은 아들과 아내를 미국으로 보낸 ‘기러기 아빠’였다. 추석 연휴 중 이들을 부장과 사무실에서 보내게 된 최 대리는 할 말을 잃었다.

중견기업 B사 품질팀에 근무하는 강 대리(32·남)는 설과 추석 연휴 때마다 당직을 선다. 1년 365일 공장이 돌아가야 하는 회사 특성상 명절 때도 일정 인

원의 품질팀 직원들은 출근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서울이 고향인 강 대리가 명절 때마다 ‘단골 당직자’가 된다는 것. 입사 초기 선배들이 “고향이 서울이었지? 종교는 기독교?”라고 넌지시 물어봤을 때 아무 생각 없이 “맞습니다”라고 말한 게 비극의 시작이었다.

명절 연휴가 다가오면 팀장은 조심스럽게 강 대리를 불러 이렇게 말한다. “다른 직원들은 고향이 멀지만 강 대리는 집이 서울이잖아. 게다가 집안이 기독교라 제사도 지내지 않는다면서?” 강 대리도 처음엔 동료들의 사정을 고려해 연휴 때 회사에 나왔지만 매번 명절 때마다 출근하는 게 지겨워졌다. “다음 명절부터는 제사를 지내자고 부모님께 말씀드릴까 생각 중입니다. 연휴 출근 때문에 이제 종교까지 버리고 싶다니깐요.”

◆차라리 출근이 낫다(?)

마지못해 출근을 자청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있다. H그룹 계열사 한 부장(47·남)은 이번 추석 당직근무를 신청했다. 아내가 강력하게 원했기 때문이다. 한 부장의 아내는 “딸이 공부도 해야 하고 나도 몸이 안 좋으니 이번 추석 댄 집에서 쉬고 싶다”고 했다. 시댁에 거짓말을 할 순 없으니 ‘남편 근무’를 핑계로 집에서 쉬겠다는 것이다.

중견 디자인업체에 근무하는 조 대리(28·여)도 이번 추석 연휴 때 출근을 자청했다. 지난 설 때의 악몽 탓이다. 지난해 결혼한 ‘초보 며느리’ 조씨는 지난 설 시댁에 가서 난생 처음 갖은 음식을 만들고 제사 준비를 하느라 맘을 뻘뻘 흘려야 했다. 결혼 전 요리 한번 하지 않았던 조 대리는 연휴 내내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들어가며 전을 부쳐야 했다. 밭상 남편은 쇼파에 벌러덩 누워만 있었다.

결국 조씨는 이번 추석을 앞두고 1주일간 남편을 들볶은 끝에 연휴 첫날인 수요일과 금요일에 출근하기로 했다. “밭상 남편한테 출근을 허락해주지 않으면 국물도 없을 것이라고 소리쳤죠. 대신 추석 연휴 출근으로 받은 수당은 남편을 위해 투자하려고요.”

황○○/강○○/박○○ 기자 hjs@hankyung.com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3091607481&sid=01062062&nid=009&type=0>>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한경닷컴은 직장인의 애환이나 풍속도를 그린 [金과장 & 李대리] 기획시리즈를 게재하면서 자사 메인페이지를 소개하는 포털사이트 네이버 <뉴스스탠드> 난에 치마를 입은 여성이 다리를 꼬고 앉은 모습의 사진 아래 「女직원, 추석때 출근했다니 부장이 ‘충격」이라는 제목을 게재하고 이를 열어 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위 기사에서 여직원을 언급한 부분은 두군데이다(고딕체 부분). 한 여직원은 추석 연휴 근무를 해야하는데 수당을 신청하지 말라는 부장의 지시로 수당없이 근무해야 한다는 푸념을 늘어놓고 있고, 다른 여직원은 집안일에서 벗어나기 위해 연휴기간 중 일부러 출근한다는 내용이다.

그런데도 매경닷컴은 기사와 전혀 상관없는 사진을 게재하고 이 같은 제목을 달아 마치 여직원과 부장이 함께 근무한 것처럼 내용을 호도하였고, 다소 선정적인 사진을 게재함으로써 억측이나 불필요한 상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추석연휴에도 쉬지 못하고 부득이 근무해야 하는 직장인의 힘든 일상을 소개한 위 기사는 독자들의 공감을 살 만한 좋은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이같이 왜곡된 제목을 다는 것은 독자들에게 의아심과 실망감을 줄 뿐이다. 이용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제목과 동떨어진 내용의 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정확성, 객관성이 결여된 보도일 뿐만 아니라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 「보도와 평론」, 제7조 「언론인의 품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 「편집지침」 ②(편집변경 및 선정주의 금지)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4-3016 신문윤리강령 위반
조인스닷컴 발행인 박 상 순

<주 문>

조인스닷컴 2014년 1월 22일자(캡처시각) 1)「교무실서 여고생 아래속옷에 손 넣곤... ‘충격」, 2)「남학생 2명 불러내 성기 주무르더니...」, 3)「학부모와 간통」 교사 남몰래 교실서...혁, 4)「여중생 가슴 만진 교사 2년뒤...」, 5)「성추행 당한 여고생 “친구들 앞에서...”」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 유>

1. 조인스닷컴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1. 22. 10: 39 캡처>

1) 교무실서 여고생 아래속옷에 손 넣곤... ‘충격’
 미성년 성범죄 교사 10명 중 4명 학교서 목쓸 짓
 [중앙일보] 입력 2014.01.22 02:30 / 수정 2014.01.22 09:03
 교실·교무실서 가장 많이 저질러
 2차 피해 우려 학부모 되레 덮기도
 전북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A양(9)에게 교실은 공포의 공간이었다. 할아

버지뺨인 50대 후반의 특수학급 교사 S씨가 2008년 여름부터 1년여간 교실에서 여덟 차례나 강제 추행했기 때문이다. 그는 2011년 파면됐다.

(이하 생략)

<http://joongang.joins.com/article/aid/2014/01/22/13288389.html?cloc=nnc&total_id=13701639>

2) 남학생 2명 불러내 성기 주무르더니...

미국 성희롱만 해도 해임 ... 한국은 유죄 확정돼야 퇴출

[중앙일보] 입력 2014.01.22 02:30 / 수정 2014.01.22 03:05

학교에 남아 있는 성범죄 교사들 <하>

미 아동포르노 소지 교사 200년형

한국 성매매 적발해도 견책 처분

“대다수 선량한 교사들 사기 떨어져

극소수 문제 교사 즉각 내보내야”

지난해 5월 전북 무주의 한 고등학교, 22년차 체육교사 박모씨는 학교 축제 날 1학년 남학생 2명을 관사 앞으로 데리고 가 대낮부터 술을 마셨다. 술에 취한 박씨는 갑자기 두 남학생의 성기를 주무르고 머리와 뺨을 8차례 때렸다. 경찰은 그를 성폭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전북도교육청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박씨를 해임했다.(이하 생략)

<http://joongang.joins.com/article/aid/2014/01/22/13288376.html?cloc=nnc&total_id=13701638>

3) ‘학부모와 간통’ 교사 남몰래 교실서 ... 혁

성범죄 저지른 교사 146명, 학교 안 떠났다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2014.01.22 00:06 / 수정 2014.01.22 09:04

5년 동안 적발된 교사 242명

해임·파면 등 중징계 84명뿐

2009년 3월 경북 포항의 초등학교 교사 임모(당시 29세)씨는 자신이 개설한 채팅방을 통해 만난 여고생 C양(17)에게 11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맺었다 적발

됐다. 하지만 검찰은 임씨에게 ‘성구매자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다. 해당 교육청도 감봉 1개월의 경징계만 내렸다. 임씨는 현재 경북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고 있다.(이하 생략)

<http://joongang.joins.com/article/aid/2014/01/22/13287289.html?cloc=nnc&total_id=13701301>

4) 여중생 가슴 만진 교사 2년뒤...

가출 여중생과 원조교제한 교사도 정직 3개월 그쳐

[중앙일보] 입력 2014.01.21 02:30 / 수정 2014.01.22 09:04

학교에 남아있는 성범죄 교사들 < 상 >

숨방망이 징계 ... 문제 되면 전보

제자 무릎에 앉히고 추행했는데 감봉만 당하고 같은 학교서 수업

동료교사들도 쉬쉬, 교장 “학생들 알게 될까 조마조마”

학부모 “해임 등 강력 처벌해야”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경기도의 한 중학교 1학년 교실. 담임교사인 A씨(49)가 종례를 마친 뒤 청소하는 남녀 학생 4~5명을 지도하고 있었다.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교실 밖 복도에서 여학생 3명이 A씨를 향해 큰 소리로 인사를 했다. “애들아, 내일 보자. 복도에서 뛰지 말고.” A씨도 학생들을 향해 손을 흔들며 인사를 건넸다.

겉으로만 보면 여느 교실과 다를 바 없는 풍경이다. 그러나 A씨는 2년 전 같은 학교에서 담임을 맡은 B양(14)을 성추행한 전력이 있다. 2012년 11월 A씨는 학교 전산실에서 B양을 자신의 무릎에 앉히고 B양의 가슴을 건드린 의혹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징계위는 “선생님이 뒤에서 껴안고 선생님 손이 가슴에 닿았다”는 피해 학생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제자를 성추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은 가벼웠다. A씨는 감봉 3개월의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그는 여전히 같은 학교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다. A씨는 “억울한 면도 많지만 오해 받을 일을 한 것 자체가 내 불찰”이라며 “현재 학생들과의 관계에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이하 생략)

<http://joongang.joins.com/article/aid/2014/01/21/13278581.html?cloc=nnc&total_id=13691584>

5) 성추행 당한 여고생 “친구들 앞에서…”

“선생님 또 마주칠까 학교 갈 때마다 두렵고 수치스러워”

[중앙일보] 입력 2014.01.21 02:30 / 수정 2014.01.22 09:04

성추행당한 여고생 법정증언

지난 9일 강원도 영월군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법정. 잔뜩 겁에 질린 표정의 10대 소녀 3명이 법정으로 들어섰다. 제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교사 정모(62)씨의 성추행 피해자 박소은(19·가명)양과 증인으로 출석한 박양의 친구 2명이었다.

정씨는 2012년 강원도 동해의 한 고등학교에 과학교사로 재직하면서 과학실·급식실 등에서 박양의 엉덩이를 만지고 허리를 감싸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양 외 다른 여학생에게 카카오톡으로 음란한 사진을 전송한 혐의도 있다.

(이하 생략)

<http://joongang.joins.com/article/aid/2014/01/21/13278582.html?cloc=nnc&total_id=13691585>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조인스닷컴은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들이 솜방방이 징계 때문에 퇴출되지 않고 학교에 남아 문제가 되고 있다는 기획기사 5건을 1월 21일과 22일 두차례에 걸쳐 보도하면서 네이버 <뉴스스탠드> 난 왼쪽 상단에 눈에 띄게 올려놓았다.

그런데 포털사이트에 노출한 제목은 원래 기사 제목과 달리 「교무실서 여고생 아래속옷에 손 넣곤… ‘충격」 「남학생 2명 불러내 성기 주무르더니…」 「학부모와 간통」 교사 낄물래 교실서… 혁」 「여중생 가슴 만진 교사 2년뒤…」 「성추행 당한 여고생 “친구들 앞에서…”」 등 하나같이 입에 담기도 어려울 정도로 선정적이고 자극적으로 바뀌 달았다. 기사의 전반적인 방향은 성범죄 전력이 있는

교사가 면직이나 격리되지 않아 학생들이 추가범행에 노출되거나 불안감에 떨고 있다는 문제점을 짚은 것인데, 제목은 온통 피해사례에만 초점을 맞췄다.

따라서 이같은 편집행위는 원래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독자에게 혐오감을 안겨주고 사회적 공기로서의 신문의 신뢰성을 실추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 「편집지침」 ②(편집변경 및 선정주의 금지)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4-3017 신문윤리강령 위반 세계닷컴 발행인 조 한 규

〈주문〉

세계닷컴 2014년 1월 24일자 「성추행 한의사 “女직원이 먼저 키스하고 팬티 벗어”」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세계닷컴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입력 2014-01-24 13:36:58, 수정 2014-01-24 15:19:13

성추행 한의사 “女직원이 먼저 키스하고 팬티 벗어”

침술 치료를 해주겠다고 간호보조 여직원들을 성추행한 80대 한의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신명희 판사는 한의원 여직원들을 성추행한 혐의(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로 한의사 서모(80)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신 판사는 서씨에게 벌금 100만원도 선고했다.

지난 1961년 한의사 면허를 취득한 서씨는 정식 신고 없이 2009년 서울 동대문구에 한의원을 차렸다. 이후 서씨는 “간이 좋아지게 해주겠다”며 간호보조로 채용한 A(20·여)씨의 가슴을 움켜쥐었으며 “뽀뽀해달라”고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씨의 범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A씨의 자궁을 치료하겠다고며 발에 침을 놓아 꼼짝 못 하게 한 뒤 팬티를 내려 성추행한 서씨는 B(22·여)씨의 몸도 더듬는 등 총 6차례에 걸쳐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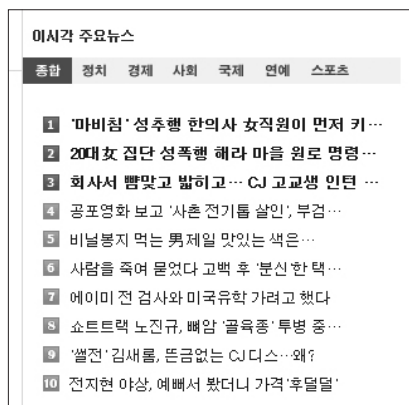
서씨는 오히려 오리발을 내밀었다. 그는 “치료 목적으로 침 놓으려 신체접촉했을 뿐 고의는 없었다”며 “피해자들이 먼저 나한테 와서 키스하거나 팬티를 벗으며 자궁을 봐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김○○ 기자 kimcharr@segye.com」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4/01/24/20140124002599.html>



〈뉴스스탠드〉



〈세계닷컴 이시각 주요뉴스, 이상 1. 24. 16:32 캡처〉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침술 치료를 해주겠다며 간호보조 직원들을 성추행한 80대 한 의사에게 징역형과 벌금이 함께 선고됐다는 소식을 다루고 있다.

위 기사의 제목 「성추행 한의사 “女직원이 먼저 키스하고 팬티 벗어”」는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주장일 뿐이다. 제목만 보면 피해 여성들이 마치 성관계를 요구한 것처럼 오해할 우려가 있다. 법원은 한의사 서모씨의 주장(치료 목적으로 침 놓으려 신체접촉 했을 뿐 고의는 없었다. 피해자들이 먼저 나한테 와서 키스하거나 팬티를 벗으며 자궁을 봐달라고 했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더욱이 세계닷컴은 위 기사를 네이버 <뉴스스탠드> 톱으로 올려놓아 독자의 시선을 유도하였고, 결과적으로 자사사이트 <이시각 주요뉴스> 1위에 오르는 등 의도적으로 선정적인 편집을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기사는 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해 제목을 달았고, 피해 여성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 ②(편집변경 및 선정주의 금지)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3. 미확인사실 과대편집 금지

▲ 2013-1096 신문윤리강령 위반

朝鮮日報 발행인 변 용 식

<주문>

朝鮮日報 2013년 3월 22자 1면 「북 국경지대 이상기류 … 軍人 12명 무장 탈북」 기사의 제목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朝鮮日報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이달 초 무장한 북한군 병사 12명이 중국 지린성 지안(集安)으로 탈북했다가 중국군에게 붙잡혀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지난달 말에는 병사 2명이 상관을 사살하고 지린성 창바이(長白) 인근으로 탈북하는 등 북·중 국경 지역의 북한군 내부에 ‘이상 조짐’이 감지된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베이징의 대북 소식통은 이날 “북한 국경수비대 소속 병사 12명이 이달 초 무장한 채 5명과 7명씩 나눠서 탈북해 지안 쪽으로 넘어갔다가 중국군에 체포돼 북송됐다”고 말했다. 옌지(延吉)의 대북 소식통은 “2월 말 북한군 병사 2명이 상관을 쏘 죽이고 창바이 쪽으로 넘어와 인근 중국군 부대에 비상이 걸렸다”고 말했다.

북·중 국경 지역 북한군의 잇따른 탈북은 식량난과 관련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작년 4월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탄)급 장거리미사일 시험 발사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이 크게 줄면서 북한군 식량 사정이 악화했다. 식량 배급이 평양과 휴전선 인근 부대를 중심으로 이뤄지다 보니 북·중 국경 인근의 부대는 옥수수과 알감자 등으로 버티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소식통은 “춘궁기가 깊어지면 북한군 탈북이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민간인 탈북자들의 강제 북송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일 중국 옌지에서 현지 공안(경찰)에 체포된 탈북자 8명은 50여km 떨어진 투먼(圖們)의 중국 측 탈북자 수용소로 이송된 뒤 지난 19일 전원 북송됐다고 대북 소식통이 밝혔다. 이들 중 5명은 10세 내외의 아이들이며, 부모가 없는 ‘꽃제비’(구걸하는 청소년)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들과 함께 체포돼 중국 공안의 조사를 받던 탈북자 출신 한국인 2명 가운데 1명은 체포 11일 만인 20일 추방돼 한국으로 돌아왔다. 두 사람은 북한에 있던 가족의 탈북을 돕기 위해 중국에 입국했었다.

A씨는 “조선족인 공안이 조사할 때 ‘당신 탈북자였던 것 안다. 제대로 말하

면 한국으로 보내고, 아니면 북송하겠다’는 협박을 여러 차례 했다”고 말했다. A씨와 함께 체포된 장모(36)씨는 현재도 공안의 조사를 받고 있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朝鮮日報의 위 적시 기사는 『이달 초 무장한 북한군 병사 12명이 중국 지린성 지안(集安)으로 탈북했다가 중국군에게 붙잡혀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것으로 알려졌다』는 게 요지다.

이 기사의 취재원은 익명인 ‘베이징의 대북 소식통’과 ‘엔지의 대북 소식통’이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원칙적으로 보도기사의 취재원을 익명이나 가명으로 표현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꼭 보도해야할 가치가 있는 사안으로서 취재원이 익명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위 기사 취재원의 익명 처리가 불가피했다고 받아들이는 것과는 별개로 이 익명 취재원이 전한 내용의 ‘사실’들을 기자가 확인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위 기사는 취재원의 익명 처리로 인해 취재원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다, 그가 전한 내용의 사실 관계가 모호하고, 이처럼 불확실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서술한 불확실한 추정 등으로 판단해볼 때 이 기사의 내용은 ‘사실’로 단정하기보다는 확인되지 않은 하나의 ‘설(說)’로 판단하는 게 옳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집자는 익명 취재원이 전한 미확인 사실을 토대로 제목을 달면서 인용부호도 사용하지 않고 ‘북 국경지대 이상기류 … 군인 12명 무장 탈북’이라고 확인된 사실인 것처럼 못박았다.

이처럼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처럼 전하고 과장된 제목을 달아 사실과의 의견을 구분하지 않은 신문 제작태도는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 ③(미확인사실 과대편집금지)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4. 관계사진 게재

▲ 2013-3011 신문윤리강령 위반 세계닷컴 발행인 김 병 수

<주문>

세계닷컴 2013년 8월 21일자 「연예인·모델 등 외국 원정 성매매 무더기 적발」 제목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세계닷컴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입력 2013.08.21 11:00:47, 수정 2013.08.21 15:43:11
연예인·모델 등 외국 원정 성매매 무더기 적발



연예인 출신과 모델이 포함된 외국 원정 성매매 여성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호주, 일본, 대만, 미국 등으로 원정 성매매를 한 혐의로 김모(27·여)씨 등 4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여권 브로커와 무속인, 외국 현지 성매매 업주 등 18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외국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포주 한모(32)씨와 국내 브로커 강모(55)

씨 등 5명을 구속했다. 브로커들은 무속인을 동원해 여성들을 속여 외국으로 보내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직업소개소 업주, 유흥업소 직원, 사채업자 등으로 구성된 국내 브로커들은 유흥업소에 일하는 여성 종업원 등에게 접근해 '단기간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며 외국 원정 성매매를 알선하고 현지 업주로부터 1인당 100만~1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브로커들은 일부 여성이 외국으로 가기 꺼리자 무속인에게 데려갔고, 미리 입을 맞춘 무속인은 '올해 삼재(三災)이지만, 외국으로 가면 대박 난다'는 등의 말로 여성들을 설득했다. 무속인은 그 대가로 한 사람당 70만~1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외국으로 간 여성들은 상반신을 노출한 홍보 영상을 찍고 이를 보고 찾아온 현지 고객과 많게는 하루 10차례 성매매를 했다. 대부분 20대 중후반인 성매매 여성 가운데는 전직 연예인과 현직 모델도 있었다.

유학생에서부터 전직 공무원, 운동선수는 물론 평범한 가정주부도 가담했다. 연예인 출신인 한 여성은 경찰 조사를 받자마자 다시 외국으로 건너가 연락을 끊는 등 상당수가 체류기간이 끝나면 잠시 귀국했다가 다시 외국으로 나가 성매매를 했다.

모두가 큰돈을 벌지는 못했다.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하던 한 여성은 지난해 1월 일본으로 건너갔다가 건강 악화로 성매매를 못하게 되면서 높은 이자의 선지급금을 갚지 못해 벽지로 팔려갔다. 여권을 빼앗겨 발이 묶인 이 여성은 경찰의 수사가 진행된 후 몇 달 만에 귀국할 수 있었다.

조중혁 국제범죄수사대장은 "여성들이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유혹돼 외국 성매매를 했지만, 연리 346%라는 높은 사채 이자 탓에 빚에 허덕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원정 성매매가 호주와 미국, 유럽 등으로 점차 확대되는 것으로 보고 국내외 브로커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 기자 ehofkd11@segye.com 』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3/08/21/20130821001324.html>>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세계닷컴은 외국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포주와 국내 브로커 등 5명을 구속했다는 경찰의 성매매사범 적발소식을 전하면서 매춘업소 여성이 호객행위를 하는 사진을 아무런 설명 없이 게재하여 마치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처럼 독자를 오도하였다.

사진 속의 여성을 모자이크 처리를 하여 신원을 보호한 노력이 보이기는 하나, 누가 보더라도 이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

기사와 간접적 관련이 있는 사진을 부득이하게 사용할 경우 그 사실을 밝혀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 「편집지침」 ⑥ (관계사진 게재)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4-3009 신문윤리강령 위반
서울신문 발행인 이 철 휘

〈주문〉

서울신문 2014년 1월 21일자 「현직 경찰男女, 근무시간에 나체로 뜨거운 밀회를…」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유〉

1. 서울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현직 경찰男女, 근무시간에 나체로 뜨거운 밀회를…』

입력: 2014.01.21 | 수정 2014.01.21 15:23 댓글보기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자료=포토리아)

젊은 혈기를 주체하지 못했던 것일까? 현직 경찰관 남자가 근무시간 중 남의 집에 불법 침입한 뒤 뜨거운 밀회를 가지다 발각돼 온라인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미국 뉴욕 포스트의 20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은 뉴욕 주 서포크 카운티 이스트 햄튼 교통 경찰관인 줄리오 마리오 갈리아노(31)와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20세 여성이다. 참고로 이 여성은 비상근 교통 경찰관으로 근무해왔다.

지난 12월 30일, 갈리아노와 이 여성은 이스트 햄튼의 멋진 별장에서 남몰래 뜨거운(?) 시간을 보내던 중이었다. 문제는 이 별장이 뉴욕 맨해튼의 유명 인테리어 디자이너 제이 아서 던넬 소유로 그 날 이 곳을 이용할 손님은 따로 있었다는 것.

신년 휴일을 맞이해 해당 별장을 찾은 세 명의 손님들이 막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그들은 민망함에 어쩔 줄 몰랐다.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남자가 그들의 용무를 충실히(?) 수행 중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벗어놓은 옷가지에 달려있는 경찰 배지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현직 경찰관이 근무지 무단이탈에 가택 불법침입까지 겸한 것이다.

뉴욕시립대학에서 형사학 전공으로 학위를 받은 뒤 경찰의 길을 걷게 된 갈리아노는 지난 2012년 '올해의 경찰관'으로도 선정된 바 있는 전도유명한 경관

이었기에 지역사회가 받은 충격은 상당히 크다. 지역 경찰 총책임자 제럴드 라슨 주니어는 “내부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한편 갈리아노와 함께 있던 20세 여성은 비상근 직에서 해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나우뉴스부 nownews@seoul.co.kr』

〈<http://nownews.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0121601017>〉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미국의 현직 남녀 교통경찰관이 근무 중 남의 집에 불법침입해 성관계를 갖다가 발각됐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벌거벗은 남자가 침대 위에 누워 있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함께 게재하고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자료=포토리아)”이라고 사진설명을 달았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 「편집지침」 ⑥항(관계사진 게재)은 “보도사진은 기사의 실체적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을 가져야 하며 그것을 사진 설명으로 밝혀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기사와 간접적 관련이 있는 사진을 사용할 수 있되 그 사실을 밝혀야 한다”고 돼 있다.

위 기사는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이라고 달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천요강 ⑥항의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다. 왜냐하면 △당사자가 아닌데도 남녀의 성적 접촉을 연상케 하는 사진을 굳이 게재한 것은 선정적인 의도라고 볼 수 밖에 없고 △비용을 지불하고 합법적으로 게재했다하더라도 당사자의 동의를 얻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포토리아(fotolia) 서비스이용약관 ‘4.이용제한사항’에는 “귀하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 비방하거나 또는 음란, 외설적인 작품 및 기타 콘텐츠를 웹사이트에 업로드하거나 게시할 수 없으며, 이를 타인에게 전송할 수단으로 웹사이트를 이용하여서는 안 됩니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는 게재된 사진의 당사자가 자신의 명예가 침해됐다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상당한 법적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 「편집지침」 ②(편집변경 및 선

정주의 금지)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4-3010 신문윤리강령 위반
서울신문 발행인 이 철 휘

〈주문〉

서울신문 2014년 1월 24일자 「성당 정문 앞서 ‘대낮 성관계’ 철없는 커플」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서울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성당 정문 앞서 ‘대낮 성관계’ 철없는 커플

입력: 2014.01.22 | 수정 2014.01.24 14:00 댓글보기



긴장을 풀게 만드는 휴양지의 분위기 탓이었을까, 철없는 커플의 황당한 추억 만들기였을까. 유명 휴양지를 여행 중인 남녀가 경건한 종교시설 정문 앞에서 뜨거운 ‘사랑’을 나누다가 경찰에 연행되는 봉변을 당했다.

사건은 남미 우루과이의 유명한 여름철 휴양지 폰타델에스테에서 최근 발생했다. 순찰을 돌던 경찰이 성당 주변을 지나가다가 정문 앞 계단에서 ‘사랑’을 나누고 있는 남녀를 발견했다.

경찰 관계자는 “주택가와 가까운 곳의 성당정문 계단에서 대낮에 두 사람이 성관계를 갖고 있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바로 경찰에 연행됐다.

확인 결과 두 사람은 아르헨티나에서 건너간 외국인관광객이었다. 현지 언론은 “여자는 20살, 남자는 18살로 두 사람 모두 폰타델에스테를 찾아온 관광객이었다”고 보도했다.

연행된 두 사람은 훈방 후 석방됐다. 경찰 관계자는 “처벌을 해야 할 일이지만 두 사람이 어리고 외국인관광객이라는 점을 감안해 관대한 처분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사진=자료사진

임○○ 남미통신원 juanlimmx@naver.com』

<http://nownews.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0122601003&wlog_sub=nvt_006>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우루과이를 여행 중인 아르헨티나 커플이 한 휴양지의 성당 앞 계단에서 성관계를 갖다가 경찰에 연행됐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벌거벗은 남녀가 침대 위에서 몸을 맞대고 있는 있는 사진을 함께 게재하고 사진설명 없이 ‘자료사진’이라고 출처를 표기하였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 「편집지침」 ⑥항(관계사진 게재)은 “보도사진은 기사의 실체적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을 가져야 하며 그것을 사진 설명으로 밝혀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기사와 간접적 관련이 있는 사진을 사용할 수 있되 그 사실을 밝혀야 한다”고 돼 있다.

위 기사는 기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진이 아님에도 사진설명을 달지 않았으며, ‘자료사진’으로 밝힌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합법적으로 취득한 사진이라 하더라도 원래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될 경우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락을 얻어야하는 것이 통례이며,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당사자로부터 별도로 승낙을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 기사는 ‘자료사진’이라고 밝혔다 하더라도, 게재된 사진의 해당 인

물의 명예를 훼손을 우려가 높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 「편집지침」 ② (편집변경 및 선정주의 금지), ⑥(관계사진 게재)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